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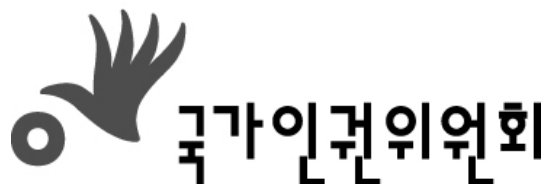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13-01

201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 개발

2015. 12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 개발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5. 12.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윤재희 (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효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다문화보육복지과 교수)
김성숙 (대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영희 (경인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외래교수)
연구보조원 정서연 (영남대학교 대학원)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 내용 및 방법	8
1) 연구 내용	8
2) 연구 방법	9
3) 연구 절차	11
II. 이론적 배경	13
1. 인권과 영유아 인권	15
1) 인권의 정의	15
2)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16
3) 인권의 범주와 내용	20
4) 아동권리협약	23
2.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	30
1) 보육 현황	30
2)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및 직전·현직 교육	33
3)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	43
4) 보육교직원의 인권의식 및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선행 문헌 고찰	47
3. 인권교육	51
1)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	51
2) 인권교육의 내용과 교수법	54
3) 인권교육의 사례	59

Ⅲ.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67
1. 인권교육 프로그램 분석	69
1)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69
2)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76
2. 요구분석	79
1) 설문조사	79
2) 면담	113
Ⅳ.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	133
1. 교재의 목적 및 목표	135
2. 교재의 내용	137
3. 교재의 구성원리와 구성	140
4. 교재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	143
Ⅴ. 결론 및 제언	145
1. 결론	147
2. 제언	150
참고문헌	153
부록	159

표 목 차

<표 II-1> 유엔 8대 인권조약	19
<표 II-2> 세계인권선언의 시민·정치적 권리	21
<표 II-3> 세계인권선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22
<표 II-4>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27
<표 II-5>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27
<표 II-6>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29
<표 II-7>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 아동 현황	30
<표 II-8>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	31
<표 II-9>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32
<표 II-10>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현황	33
<표 II-11>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33
<표 II-12> 자격 취득 교과목	34
<표 II-13> 2015년 9월 입법예고된 교사자격 취득 교과목	35
<표 II-14> 보수교육의 종류	35
<표 II-15> 보수교육의 유형과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36
<표 II-16> 일반직무교육의 내용	37
<표 II-17> 특별직무교육의 내용	39
<표 II-18> 승급교육의 내용	40
<표 II-19> 연령별 인권교육의 목표와 주요 개념	55
<표 II-20> 인권교육 교육방법	57
<표 II-2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가 제시한 인권교육 방법	58
<표 II-22> 개념분석 수업모형에 기초한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59
<표 II-23> Rest의 도덕성 4구성 요소 모형을 근거로 한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60
<표 II-24> 참여지향적 인권교육 모형	61
<표 II-25> 대인관계 증진기법을 바탕으로 한 정신간호사를 위한 인권교육	62
<표 III-1>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82
<표 III-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84
<표 III-3>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	85
<표 III-4>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85
<표 III-5>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시간	86
<표 III-6>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내용	87
<표 III-7>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교수법	88

<표 Ⅲ-8>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	88
<표 Ⅲ-9>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	89
<표 Ⅲ-10> 재직 중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 유무	89
<표 Ⅲ-11>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90
<표 Ⅲ-12>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가 어려웠던 요인	90
<표 Ⅲ-13>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91
<표 Ⅲ-14>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92
<표 Ⅲ-15>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내용	93
<표 Ⅲ-16>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형태	94
<표 Ⅲ-17>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과 연계된 교육 주제	94
<표 Ⅲ-18>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교수법	95
<표 Ⅲ-19>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	96
<표 Ⅲ-20>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운영 요인	97
<표 Ⅲ-21>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	97
<표 Ⅲ-22>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	98
<표 Ⅲ-23>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영유아 인권 침해 형태	99
<표 Ⅲ-24>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영유아 인권 침해 시간	100
<표 Ⅲ-25>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 실현 요인	101
<표 Ⅲ-26>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101
<표 Ⅲ-27> 인권교육 실행 과정에 대한 요구	102
<표 Ⅲ-28> 인권교육 실행 형태에 대한 요구	102
<표 Ⅲ-29> 인권교육 실행 시간에 대한 요구	103
<표 Ⅲ-30>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	103
<표 Ⅲ-31>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	104
<표 Ⅲ-32>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107
<표 Ⅲ-33>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109
<표 Ⅲ-34>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110
<표 Ⅲ-35> 면담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114
<표 Ⅲ-36> 면담의 분석 범주	116
<표 Ⅳ-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내용	138
<표 Ⅳ-2>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	143
<표 Ⅳ-3> 교재의 각 장별 활동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의 예	144

그림목차

[그림 II-1] TCHRE가 제시한 인권교육 모델 64
[그림 IV-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137
[그림 IV-2]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각 장별 구성 142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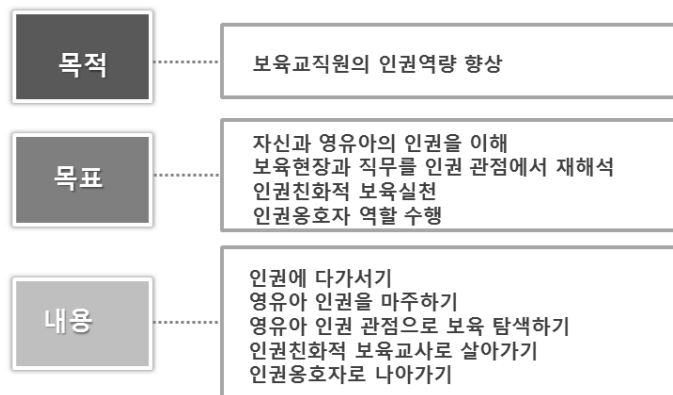
-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 필요성은 권리 보유자인 영유아 및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세계 인권교육의 동향 등에서 찾을 수 있음
- 온전한 권리 보유자인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은 이들의 인권이 실현되는 맥락으로 재구성되어야 함.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존재로 영유아의 인권 실현 수준을 결정하는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이 요구됨
- 이 연구는 보육교직원이 우선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현장에서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둠
-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인권조약과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련한 선행 문헌과 연구에 대한 분석,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시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에 포함될 인권교육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교재를 구성하였음
-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도출된 연구 내용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보육전문가, 보육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하였음
-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요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576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직원의 50.2%가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48.8%는 보육 교과목을 통해, 32.2%는 연수 및 특강을 통해, 그리고 19.0%는 교양 교과목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의 47.8%는 5시간미만, 28.0%는 한 학기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들은 영유아의 4대 권리(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와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의 85.8%가 강의형의 교수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6.4%, 만족함이 34.6%로 나타났으며, 직전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으로는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39.1%, 교육내용의 적절성이 36.0%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33.7%가 재직 중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60.8%는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20.1%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들의 참여를 방해한 요인으로는 교육시간대(56.2%),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35.1%),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34.5%), 과중한 업무(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66.3%가 재직 중 인권교육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41.6%는 직무교육에서, 22.0%는 지역별 특강 및 연수에서, 21.2%는 승급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이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은 보육교사교육원(30.9%), 육아종합지원센터(29.1%), 인권 및 아동 관련 비영리단체(11.8%)로 밝혀졌고, 이들은 인권 관련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직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의 83.5%는 집합교육의 형태로 인권교육을 받았으며, 성폭력 및 아동학대(57.3%),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15.4%),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15.4%)에

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직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 중 87.7%가 강의형의 교수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0.8%, 만족함이 40.6%로 나타났으며, 현직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운영 요인으로는 교육시간대(58.4%),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27.7%), 과중한 업무(24.3%), 교육 기간(22.8%),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직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으로는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57.3%), 교육내용의 적절성(44.2%), 강사의 전문성(27.5%), 교수 방법(15.4%), 교재의 활용 가능성(4.7%) 순으로 나타남

-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39.4%는 보통, 그렇지 않다는 25.1%, 그렇다는 23.3%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 인권 침해 형태에 대해서는 행동제한이 39.6%, 선택과 결정에서 제외(26.4%), 의사소통의 부재(20.3%)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영유아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으로는 대소집단 활동(39.4%), 자유선택놀이(25.0%), 기본생활습관(16.3%), 점심 및 간식(12.0%)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요인으로는 보육교사(44.4%), 보육환경(32.8%)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의 57.5%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5.7%는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37.3%는 직무교육에서, 30.0%는 특별연수 및 특강에서, 그리고 13.0%는 승급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행되기를 요구하였으며, 실행 형태에 대해서는 집합교육(51.7%),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33.3%)의 형태의 인권교육을 요구하였음. 인권교육의 실행 시간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의 72.9%가 3시간 이내의 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교수법에 대해서는 강의형(49.8%), 토론형(22.7%), 혼합형(20.3%)의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대부분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의 평균은 4.09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하위 요인인 하루 일과 존중은 평균 4.16, 아동 최선의 이익은 평균 4.02로 나타남. 직전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과 하루 일과 존중 총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의 경우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현직 교육 중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과 하루 일과 존중 총점,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과 인권교육 전문가 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여 ‘영유아 인권에 다가서기, 교사 인권교육 탐색하기’,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가 등의 주제가 도출되었음
-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교재의 목적, 목표, 내용, 구성원리 등을 정리할 수 있음



- 이 연구는 첫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감수성, 인권친화적인 보육의 실천 능력, 인권옹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보육현장의 일과에서 매일 직면하는 사례 중심의 통합적 교수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셋째,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직전 교육 차원의 인권교육 강화와 보육교사 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육 차원의 인권교육 강화,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언할 수 있음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주요 인권조약과 인권과 인권교육에 관련한 문헌,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문헌,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에 관련한 문헌과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의 직전·현직 교육과정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의 실태,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인식,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을 하였다. 문헌연구와 수집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재에 포함될 인권교육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여 교재를 구성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은 권리 보유자인 영유아 및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세계 인권교육의 동향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를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 출생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¹⁾는 협약 비준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권리실현이 사망률, 출생등록과 보건의료 등 생존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재연 외, 2015). 이에 위원회는 2005년 일반논평²⁾ 7번 “초기 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논평에

1)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협약 비준국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전문가 단체이다(이재연 외, 2015).

2)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인권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이다(황옥경, 2012)

서 영유아기의 중요성과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영유아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유해미 외, 2011).

일반논평 7번에 따르면 영유아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부여된 모든 권리의 보유자이며 자신의 권리에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이다. 또한 자신의 관심사와 이익과 관점을 가진, 가족과 공동체 및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다. 논평은 영유아기를 전통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에서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가는 사회화 과정이 아니라 이후 삶의 토대가 되는 결정적 시기이자 권리 실현의 결정적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초기 유년기를 살아가는 영유아의 특징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들이 직면하는 특별한 이익, 경험, 도전들을 존중하는 것이 권리 실현의 출발이라고 강조하였다. 유년기는 취학 이전의 시기와 취학으로의 이행기가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로 규정되는 출생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수동적이고 나약하고 의존적이며 순수하고 미성숙한”(Mac Naughton, Hughes & Smith, 2007, p.164) 존재가 아니라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Thorpe, Boyd, Ailwood, & Brownlee, 2011).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영유아보육법 제2조)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유아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보육정책과 법률 제정, 보육 관련자들의 인식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영유아 인권에 근거한 보육과정과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보육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 역량을 갖춘 보육교직원이 필수적이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만큼이나 영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이들의 인권 역량은 영유아의 인권 실현과 직결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영유아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보육교직원, 보육 공무원, 경찰, 사회복지사, 법률가, 행정가,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있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와 접촉이 빈번한 전문가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의무이행자이다(재인용, 이재연 외,

2015). 보육교직원은 전문적 지식과 훈련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을 수행하며 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보육교직원을 통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이라는 체계와 보육교직원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언론 보도와 통계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보육교직원에게 의해 침해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2014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총 10,027건 중 0~5세 영유아의 피해사례는 2,310건(23.04%)이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그중에서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학대는 295건으로 0~5세 영유아 학대 사례의 12.77%를 차지한다.

영유아를 학대한 보육교직원의 특성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274건(33.8%), 성격 및 기질 문제가 61건(7.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 51건(6.3%) 등으로 나타났다. 즉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영유아 학대의 상당수가 성인 중심의 태도와 직무능력과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보육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직전·현직 교육 과정 중의 인권교육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영유아복지법 개정(2015.9.19.)을 통해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CCTV는 보육현장에 예상치 못한, 보다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CCTV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 속에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요구에 “신체적으로 둔한”(physically unresponsive) (Johnson, 2000, p.79) “Hands-Off”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CCTV 영상, 특히 음성이 제거된 영상은 교실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만들 수 있다. 의도와 다르게 자신의 보육 행동이 이해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보육교직원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지도를 포기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CCTV로 인해 유발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 사이의 신체적 거리는 이들의 심리·정서적 유대와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학대를 예방하

는 것은 물론 영유아의 권리가 최대한의 수준으로 실현되려면 보육교직원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영유아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권의식과 민감성이 높은 교사가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선행 문헌(정진이, 2014)은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함양이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인권교육 동향에서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제2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과 교원, 공무원, 법 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흐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도교육청 교사교육 훈련 기관에 인권 과목 개설을 추진하였고 2004년부터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 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교감·교장의 자격연수 등에서 인권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양천수 외, 2011). 영유아 교사를 위한 현직교육 과정에서도 인권교육이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다.

보육교직원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을 바탕으로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점에서 보육교직원은 제2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언급한 주요한 인권교육 대상자이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을 위한 일반직무교육에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의 이해」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과목은 2010년 이전에는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학대예방」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현직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인권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2015년 9월 입법 예고되어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아동권리와 복지」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개별 교사 양성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던 인권교육이 자격 취득의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득·유지 및 승급교육 과정에 인권 관련 교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된 인권교육의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1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은 교원을 위한 인권교육에는 인권,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인권보호 기제에 관한 지식과 교사와 교

직원의 사회적 기술과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 학교생활에서의 참여, 학교 내 인권침해 사안의 인식과 해결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인권교육은 그 과목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학대 예방이나 보호권에 관련한 보육교직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김인숙 외, 2011).

교사는 인권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Flowers, Bernbaum, Rudelius-Palner & Tolman, 2000) 전문가이다. 이들을 위한 인권교육은 자신의 인권에서 출발하여 점차 큰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의무 이행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개인적·심리적 수준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인권, 특히 직무를 수행하며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유아의 인권을 인식하고 영유아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관계적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양천수 외, 2011; 이미식, 2008).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된 교육 자료는 보육교직원이 1)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고 2)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3) 현장에서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4)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내용

첫째, 인권조약과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련한 선행 문헌과 연구에 대한 분석이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내용과 구성 원칙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출간된 관련 선행 문헌 및 연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과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 인권과 아동권리 관련 문헌, 보육교직원의 인권·아동권리 인식 관련 문헌, 아동권리준중 보육의 실행수준 관련 문헌 등을 포함한다. 또한 전반적인 보육 현황, 보육교직원의 직전·현직 교육체계와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 내용 분석이다.

인권교육에 관한 문헌과 다양한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특히 2015년 10월까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 공공분야에서 개발 및 사용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자료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자료실을 통해 확보하였다.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경우 해당 기관에 공문 및 전화 요청을 통해 협조를 구한 다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 PPT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관한 내용 검토를 통해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운영상의 특징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던 직전·현직 교육과정 중의 인권교육 현황과 실태,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향후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에 대한 요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전국 지역별 단위로 보육교직원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 영유아 인권과 인권친화적 보육에 대한 인식,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 등을 더욱 세밀히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이다.

기초연구, 설문조사, 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의 목적과 목표, 구성원리, 내용, 교수 방법 등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 방법,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관련 갈등 상황과 인권친화적 해결방안, 인권옹호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 역할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위해 가장 먼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7번과 함께 국내·외 인권 관련 문헌을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 특히 보육현황, 보육교직원의 직전·현직 교육의 체계와 내용,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 등에 관련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인권·아동권리 인식과 인권친화적 직무수행에 대해 논의한 기존의 선행연구 역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관련한 문헌과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영역과 내용을 추출하였다. 여기에는 보육교직원의 현직 교육에서 시행되었던 인권교육의 내용은 물론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과 영유아 인권,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 인권교육의 정의와 내용, 교수법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였다.

(2) 설문조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를 살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표집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육통계를 기초로 전국 단위 시도별과 지역 규모별(대도시, 시군구, 읍면리) 어린이집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여 표집 하였다. 총 6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9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충실하게 응답한 57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보육교직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직전·현직 교육에서 경험한 인권교육 현황과 만족도, 영유아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내용에 대한 요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빈도 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 t-test의 통계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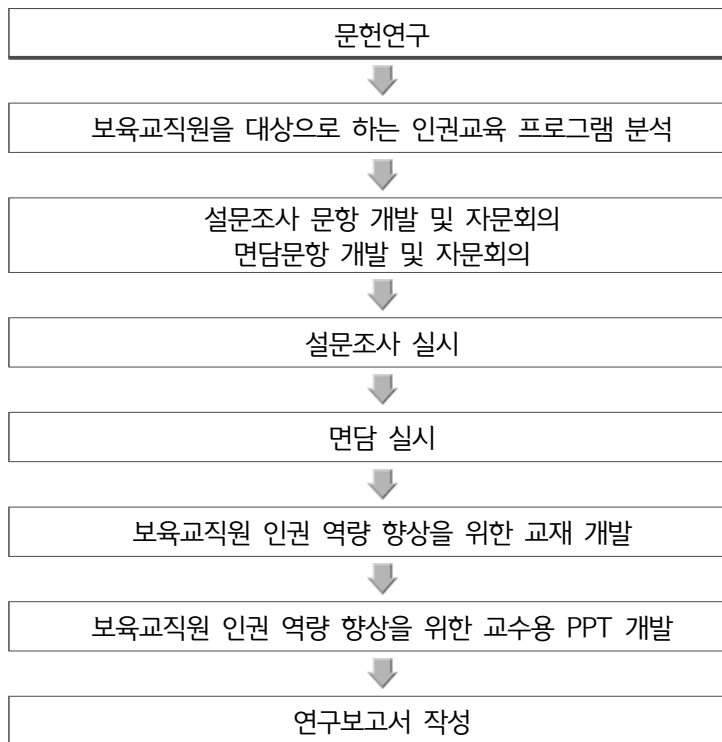
(3) 면담

보육교직원이 경험한 인권교육의 현황, 영유아 인권과 인권친화적 보육에 대한 인식,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어려움과 요구사항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 보기 위해 보육교직원과 인권교육 전문가 17명을 선정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았다. 먼저, 추천받은 보육교직원들과 유선으로 접촉하여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에 관해 설명한 다음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하였다. 참여의사를 밝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내외의 면담을 1회 혹은 2회 실시하였다. 각 면담은 개인면담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은 면담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인권교육의 경험과 교육내용,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발생 이유와 구체적 사례,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에 대한 의견,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사례,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 등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의 모든 과정을 녹음했고 면담 종료 후 전사한 후 분석하였다.

(4) 자문 회의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의 과정으로 도출된 연구 내용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보육전문가, 보육행정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회의를 하였다.

3) 연구 절차



II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영유아 인권
2.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
3. 인권교육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이론적 토대를 명확하게 하고자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우선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주요 인권조약, 인권과 아동권리를 주제로 하는 문헌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에게 관련하여 보육현황, 보육교직원의 직전·현직 교육과정,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의 내용과 교수법,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였다.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권과 영유아 인권

1) 인권의 정의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이 사람이 살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종류의 권리와 다른 점은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얻은 자격이나 능력을 통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규약 등의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다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천부적인 권리이며 도덕적인 권리이다(Levin, 2012). 인권은 영어 단어인 human rights를 번역한 단어로 사람이 사람으로 당연히 가진 권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사용한다. 권리에 해당하는 단어인 right는 ‘옳다’(rectitude)는 것과 ‘자격’(entitlement)이라는 의미가 있다(조효제, 2008). 이를 고려하면 인권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배화옥 등, 2015, p. 19)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은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료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약 등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맡길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비슷하게 인권을 정의한다.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도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하게 인권을 정의한다. 설규주(2005)는 인권을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성장해 가면서 희망하고 요구하는 것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P.34)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미희(2005) 역시 인권을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타고난 자연권과 개인이 국가·사회적 존재로서 행사하고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총 목록”(p. 31)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권에 대한 정의는 문헌이나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인권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배화옥 외, 2015; Flowers et al., 2000). 첫째, 인권은 보편적(universal)이고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속성을 지닌다. 인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갖는 권리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둘째, 인권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고 불가분(indivisible)한 속성을 지닌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약은 인권의 여러 영역 혹은 범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각 영역이나 범주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와 분리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평등하고(equal)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인 속성을 지닌다. 인권은 피부색, 성별, 종교, 연령, 신체적 능력, 성적기호, 민족, 사용하는 언어 등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모두 평등하게 누리는 권리이다.

2)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인권에 대한 아이디어나 가치는 근대 이전부터 인류 공동체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다(Flowers et al., 2000,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Gifted Education IDGE, 2012). 여러 문화권의 종교나 사상에서 인권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Benedek, 2006). 예를 들면 춘추전국 시대 묵자의 사상이나 힌두교, 불교와 이슬람교에서 찾을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권과 맞닿아 있는 가치들이다(하승수, 2011, p.56~63). 물론 그리스도교에서도 비슷한 생명존중 사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인권은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등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나타나 계몽시대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17, 18세기에 등장한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 자연법론은 인권이 정립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개인주의 사상, 평등사상, 과학 정신의 발달,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p. 12)은 인권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조이다. 인권 형성에 이바지한 역사적 사건과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하승수, 2011).

1215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최초의 성문화된 권리보장

1628년 권리청원

인신의 자유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음을 규정

1679년 인신보호법

인신의 자유를 위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는 구속적부심사제를 제도화

1689년 권리장전

청원권과 언론의 자유 및 형사 절차의 보장 등을 규정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Bill of Rights)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저항권 등을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규정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인권에 대해 자연법적 기초를 부여하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권리를 천부적 권리로 선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재산권, 사상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불가침의 권리로 선언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생존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도입한 효시

인류는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겪으며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목격하였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협동적이고 평화적인 국제 관계를 유지하는 장치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1945년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결성되었다. 당시 유엔에 참가한 국가들은 유엔헌장에 인권을 포함하는 문제

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약소국들과 비정부 국제조직들의 노력으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총회는 인권을 포함한 유엔헌장을 채택하였다(한국유네스코, 2002; Hoffman & Rowe, 2009).

인간의 권리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사명을 천명한 유엔헌장은 인권을 위한 유엔의 국제적인 노력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유엔헌장은 인권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였다(오병선 외, 2011; 하승수, 201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46년 2월 1차 회의에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구성하여 세계인권선언의 초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약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세계인권선언의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 최종안은 1948년 9월 파리 유엔총회에 제출되었고 사회, 인도 및 문화적 사안에 관한 제3위원회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확정되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찬성 48개국, 기권 8개국의 표결로 반대표 없이 채택되었다(나종일, 2012; 한국유네스코, 2002).

세계인권선언을 기점으로 인권의 개념과 가치는 확대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개별 권리의 내용을 언급하는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최초의 선언문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권에 대한 현대적 합의를 만드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Donnelly, 2002). 그러나 선언이라는 명칭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세계인권선언은 채택될 당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국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한국유네스코, 2002). Morsink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 관련 법률문서가 약 200여 개 등장했는데 이 중 65개가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Freeman, 2005, 재인용).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구속력 있는 일반 조약”(오병선 외, 2011, p. 60)으로 구체화하는 두 개의 국제조약을 채택하였다. 흔히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과 자유권 규약으로 불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두 규약을 포함하여 유엔이 채택한 중요한 인권 조약은 다음과 같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오병선 외, 2011).

<표 II-1> 유엔 8대 인권조약

조약명	채택일/ 우리나라 발효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dical Discrimination	1965/ 1979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1990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990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98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199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199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미가입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 with Disabilities	2006/ 2009

3) 인권의 범주와 내용³⁾

인권의 당위성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구성하는 범주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Fields, 2013). 이는 인권이 사회적 산물로 만들어진 개념으로 인류의 역사를 거쳐 형성되고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인권의 범주와 내용은 달라진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나달숙, 2011; 노희정, 2008; 문미희, 2005, 2006).

인류 역사의 각 시대를 지배했던 특정한 인간관과 세계관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인권의 내용이 다르다. 이 때문에 인권을 단계 혹은 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삭은 인권을 1, 2, 3세대로 구분 지어 설명하였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Schulz-Reiss & 공현, 2010). 비록 바삭이 인권을 세대별로 구분했지만 후속 세대 인권이 앞선 세대의 인권을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후속 세대 인권은 앞선 세대 인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더욱 확장된 것이다. 세대별 인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제1세대 인권에는 자유권 중심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포함된다. 주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극적 권리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의 소극적인 불개입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로부터의 자유”로 불리기도 한다. 제2세대 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주로 포함된다. 사람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한 권리로 “~에 대한 권리”라고 표현된다. 특히 제2세대 인권은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1세대 인권과는 다르다.⁴⁾ 마지막으로 제3세대 인권은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로 국제적인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는 국경을 초월한 권리이다. 제1세대 인권과 2세대 인권이 국가와 개인(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권리라면 제3세대 인권은 범지구적 협력 중심의 연대권이다(문미

3) Fields(2013)는 인류가 “인권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있다는 데에는 광범위한 의견 일치 있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p. 86)고 하였다. 안경환(2008)은 인권이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으로 인해 “인권의 내용이 항상 수정될 수 있고...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에 의해 인권의 영역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조효제(2008)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세대별 인권에 대한 오해에 대해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유권과 사회권은 각각 소극적 차원과 적극적 차원이 있으므로 국가의 개입이 없거나 있다는 것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자유권의 하나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회, 2005; 오병선 외, 2011).

인권의 내용은 세계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을 바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세계인권장전은 그 첫머리에 해당하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Fields, 2013; IDGE, 2012; Levin, 2012). 세계인권장전에 나타난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더불어 최근 중요하게 주목받는 제3세대 인권인 연대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배화옥 외 2015; 안경환, 2008).

시민·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통치권에 대항해서 발전한 고전적 인권이다. 시민적 권리는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이고, 정치적 권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국가의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하는 권리이다. 바삭이 제시한 제1세대 인권 혹은 자유권으로 분류되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부터 21조 그리고 자유권규약의 전문과 본문 53개 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 세계인권선언의 시민·정치적 권리

세부 영역	종류
시민적 권리	생명권,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정치적 권리	정치활동을 할 권리,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 재산권

다음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반영된 권리이다. 바삭이 제시한 제2세대 인권 혹은 사회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분류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22조부터 27조 그리고 사회권 규약의 전문과 본문 31개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세계인권선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세부 영역	종류
경제적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노동권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관한 권리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아동보호에 관한 권리 가능한 최상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영위할 권리
문화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에 대한 권리 소수자 권리

마지막으로 연대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통해 확립된 앞선 두 영역의 인권과 달리 생성 단계의 권리이다(안경환, 2008). 제3세대 인권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국제법규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81)으로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처분권, 발전권, 평화·안전권, 환경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병선 외(2011)는 제3세대 인권이 아직 이론적으로 확립되지 않아 연대권에 포함되는 인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여러 학자가 규정한 연대권에 포함되는 인권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바삭 (1977)**

발전권,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한 소유권

● **유네스코 (1980)**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인도주의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

● **마스크 (2005)**

발전권, 환경권,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인도적 원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웨스턴 (2006)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결을 누릴 권리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누릴 권리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평화를 누릴 권리,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 인도적 구조를 받을 권리

출처: 오병선 외(2011)

4) 아동권리협약

모든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듯이 아동 역시 권리를 가진다. 이 인식은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이 시기 사회개혁가들은 아동 구제를 자신들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일례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최초의 규제인 “도제의 건강 및 덕성에 관한 법”이 1802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 법은 9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들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후 지속해서 아동노동을 관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나종일, 2012).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스웨덴 교육학자인 엘른 케이는 “아동의 세기(The Century of Child)”에서 아동이 좋은 가정과 적절한 교육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폴란드의 야누스 코르차크 역시 아동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주장이 명문화된 첫 번째 국제문서는 제네바 아동권리선언(Gener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 선언은 1922년 아동복지회의 창설자 에글렌타인 켈이 기초하고 1923년 제네바의 국제어린이구호협회가 채택하여 1924년 국제연맹이 승인하였다(나종일, 2012; 박병도, 2007; 이배근, 1998).

이후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지속 끝에 아동권리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박진완, 2010; 우병창, 2011; 하승수, 2012). 유엔총회는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2014년 4월 2일까지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의 과정을 거쳐 12월 20일 협약 당사국⁵⁾이 되었다.

(1)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아동권리협약의 탄생 이전에 이미 아동권리를 언급한 국제선언들이 있다. 제네바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1924년 국제연맹에서 채택된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아동의 권리를 문서로 밝힌 최초의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나종일, 2012).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인류 공동체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으로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

전문에 따르는 5개 조항에서 언급하는 아동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받아야 하며(제1조), 굶주리거나 병든 아동, 발달이 늦은 아동, 비행 아동, 고아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제2조), 위험에 처한 경우가장 먼저 구제를 받아야(제3조) 한다. 또한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보호 받아야 하며(제4조),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육되어야 한다(제5조). 전문과 5개 조항에서 드러나듯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은 성인이나 사회가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이노홍, 2013).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발표 후 30년이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 1946년 유엔 총회는 유엔 어린이 긴급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을 창설하였다. 1948년에는 기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에 “인종, 국적, 종교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와 한 가족으로서의 어린이 존중”이라는 원칙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생애 초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의 인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이

5) 협약의 당사국은 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Levin, 2012).

제시한 모든 권리의 가진 존재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언급하는 조항은 제25조 2항과 제26조이다. 제25조 제2항은 어머니와 아동이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적서의 관계없이 아동이 같은 사회적 보호를 누려야 한다고 하였다. 제26조에서는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후략)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목표로 하여야 한다. (후략)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유엔은 1959년 11월 20일 제네바 아동권리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을 채택하였다(황옥경, 2012). 전문과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이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1924년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9년 아동권리선언 등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선언이었다. 이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인권조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박한비, 2014) 이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이 채택되었다. 아동과 관련하여 사회권 규약에는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유권 규약에는 생존권, 주거·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

다. 폴란드 정부는 1978년 2월 7일 제34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한지숙, 홍은주, 1998). 이후 10년 동안의 조약화 작업을 거쳐 1989년 11월 20일 비로소 아동권리협약이 완성되었다(박진완, 2010; 우병창, 2011; 하승수 2012).

세계인권선언,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동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제정하였다. 이는 인권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인 노력에 아동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이재연 외, 2015). 아동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부여된 최초의 국제조약에 해당한다. 협약 비준국은 자국의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아동권리협약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의무를 가진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련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기준으로 불리기도 한다(유해미 외, 2011;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협약 외에도 국제사회는 소외되고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언급하는 선택의정서 3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의 무력 분쟁에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의 개인 청원권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다.

(2)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이노홍, 2013). 전문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 등 관련 문서를 언급하고 인격체로서의 아동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해 선언하고 있다. 54개의 조항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1부에는 제1조부터 제40조가 포함되며 각 조항은 실제적인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는 제41조와 제42조부터 제45조가 포함되며 주로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3부는 제46조부터 제54조까지이며 서명, 비준,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 유보, 폐기, 수탁자, 원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구성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구성		해당조항
전문		-
조항	1부	제1조부터 제40조
	2부	제42조부터 제45조
	3부	제46조부터 제54조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참여 및 의견존중 원칙을 들 수 있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우병창, 2011; 이노홍, 2013; 이배근, 1998; 하승수, 2012).

<표 II-5>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조항
비차별 원칙	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제6조
참여 및 의견존중 원칙	제12조

첫째,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동은 민족, 인종, 사회적 출신, 성별, 언어, 종교, 연령, 신체적 능력, 성적 기호,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 제 3조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 이익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모든 활동을 평가할 때 부모나 국가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고려해서는 안된다.

셋째,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원칙은 모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고유한 권리를 지니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특별하게 그들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사회로부터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참여 및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행정적 절차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이 원칙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4)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아동의 권리는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된다(국제아동인권센터, 2014; 이노홍, 2013; 이배근, 1998; 하승수, 2012). 그러나 선행 문헌은 각 권리 영역에 포함되는 협약의 조항을 약간씩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4대 권리 영역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부 선행 문헌은 제7조 성명권과 국적권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모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혜원, 2001). 또한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발달권으로 구분되었던 권리가 참여권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정보를 누릴 권리는 발달권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참여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진숙, 2014; 이배근, 1998). 박향아(2002)는 이들 권리를 발달권과 참여권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본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6>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권리 영역	내용 및 해당 조항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 안전한 주거지,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서비스 (제6조,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보호권	모든 형태의 폭력, 차별, 과도한 노동, 부당한 대우, 약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제2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발달권	정규 및 비정규 교육, 여가와 문화생활, 정보획득, 생각과 양심의 자유 등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참여권	의사 표현의 자유, 아동 의견 존중, 정보 접근, 모임의 자유 등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첫째, 생존권(right to survival)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 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생존권에 해당된다.

둘째, 보호권(right to protection)은 모든 형태의 차별,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협약은 난민이나 소수민족 아동과 같이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셋째, 발달권(right to development)은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다. 여기에는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넷째, 참여권(right to participation)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유롭게 모임을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2. 보육현장과 보육교직원

1) 보육 현황

보건복지부(2015)가 발표한 보육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43,742개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전체 0~5세 영유아 중 52%에 해당하는 1,496,671명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26,903개의 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었고 보육 아동은 총 930,252명이었다. 지난 10년 사이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 모두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보육의 양적 확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2014년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5)를 바탕으로 보육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기관유형을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전체 보육 아동 중 76.21%(1,140,664명)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10.639%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의 상당 부분을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7>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 아동 현황

2014.12.31. 현재(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14	계	1,496,671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남	773,987	82,306	55,049	25,478	400,579	188,152	2,012	20,411
	녀	722,684	76,935	49,503	23,697	374,835	177,098	1,762	18,854

2014년 연령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8>과 같다. 전체 연령 중 만 2세가 409,954명(27.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만 1세가 342,056명(22.854%)이었다.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인 만 3세, 4세, 5세 유아 중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는 각각 265,338명(17.728%), 177,014명(11.827%)과 155,510명(10.39%)이었다

양적 확대와 함께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2005년부터 평가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1, 2차 시행을 거쳤다(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4).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43,742개의 어린이집 중 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총 50,549개소(115.6%, 전체 대비)이며 인증 유지 어린이집이 총 32,590개소(74.5%)에 이른다.

<표 II-8> 연령별 보육 아동 현황

2014.12.31. 현재(단위: 명)

구 분	설립주체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만0세	계	138,563	3,871	2,784	1,023	35,084	94,175	163	1,463
	남	72,508	2,026	1,484	544	18,437	49,169	87	761
	녀	66,055	1,845	1,300	479	16,647	45,006	76	702
만1세	계	342,056	21,053	14,922	6,081	137,708	154,388	618	7,286
	남	176,649	10,787	7,840	3,142	71,446	79,299	329	3,806
	녀	165,407	10,266	7,082	2,939	66,262	75,089	289	3,480
만2세	계	409,954	34,642	25,533	10,604	216,513	112,432	916	9,314
	남	210,465	17,803	13,250	5,572	111,068	57,478	486	4,808
	녀	199,489	16,839	12,283	5,032	105,445	54,954	430	4,506
만3세	계	265,338	36,354	24,270	11,588	180,139	3,072	814	9,101
	남	138,016	18,968	12,708	5,973	93,497	1,621	449	4,800
	녀	127,322	17,386	11,562	5,615	86,642	1,451	365	4,301
만4세	계	177,014	32,198	17,948	9,447	109,420	640	660	6,701
	남	91,519	16,582	9,447	4,888	56,479	323	337	3,463
	녀	85,495	15,616	8,501	4,559	52,941	317	323	3,238
만5세	계	155,510	29,640	17,060	8,667	93,817	476	576	5,274
	남	80,368	15,348	9,014	4,458	48,292	228	310	2,718
	녀	75,142	14,292	8,046	4,209	45,525	248	266	2,556
만6세 이상	계	8,236	1,483	2,035	1,765	2,733	67	27	126
	남	4,462	792	1,306	901	1,360	34	14	55
	녀	3,774	691	729	864	1,373	33	13	71

보육교직원의 현황은 <표 II-9>에 나타난 바와 같다.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311,817명의 보육교직원이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보육교직원 중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78.547%(244,924명)이다.

<표 II-9>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현황

2014.12.31. 현재(단위: 명)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남	여
전국	총계	남	14,270	1,431	1,968	95	57	5	45	470	87	10,112
		여	297,547	42,101	216,621	1,761	489	921	1,209	670	28,481	5,294
	국공립	남	884	46	62	22	6	0	0	15	2	731
		여	28,093	2,407	20,419	760	129	113	173	147	3,192	753
	사회복지법인	남	1,878	305	169	55	38	3	5	84	6	1,213
		여	17,167	1,113	12,524	713	283	109	131	71	1,899	324
	법인·단체 등	남	729	53	39	4	2	0	0	19	3	609
		여	8,020	797	5,744	79	16	45	61	69	971	238
	민간	남	9,117	755	1,107	14	11	2	40	304	60	6,824
		여	132,860	13,994	101,441	200	60	517	732	227	13,527	2,162
	가정	남	1,527	265	546	0	0	0	0	44	13	659
		여	101,420	22,956	69,155	5	1	3	0	36	7,715	1,549
	부모협동	남	25	5	5	0	0	0	0	1	0	14
		여	831	142	560	1	0	0	0	2	101	25
	직장	남	110	2	40	0	0	0	0	3	3	62
		여	9,156	692	6,778	3	0	134	112	118	1,076	243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의 자격 급별 현황은 <표 II-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 교사 218,588명 중에서 1급 자격을 소지한 보육교사는 절반에 가까운 109,260명(49.98%)으로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한 보육교사는 97,930명(44.80%), 3급은 11,398명(5.214%)이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재직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1, 2, 3급 자격으로 살펴보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1급 보육교사는 74.01%(80,866명), 2급 보육교사는 82%(80,606명), 3급 보육교사는 94%(10,777명)로 나타났다.

<표 II-10>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현황

2014.12.31. 현재(단위: 명)

구분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 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1급	109,260	13,128	7,975	3,662	51,067	29,799	302	3,327
2급	97,930	7,086	4,560	1,995	46,141	34,465	239	3,444
3급	11,398	267	158	125	5,340	5,437	24	47

2)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및 직전·현직 교육

(1)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보육교직원 자격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원장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자격은 무시험 검정방식으로 부여된다. 자격 급별 보육교직원의 자격 취득 요건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구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일반 어린이집 원장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직원 직전·현직 교육

보육교직원 관련 자격 중 보육교사 2급과 3급은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배출된다. 직전 혹은 사전 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양성과정은 예비교사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적 태도,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다(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 200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다음의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자격 취득 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 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2015년 9월 입법 예고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른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직전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의 담당 교원에 따라 인권에 관련한 내용이 선택적으로 다루어졌다면 2017년부터는「아동권리와 복지」과목에서 예비 보육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표 II-13> 2015년 9월 입법예고된 교사자격 취득 교과목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 과 기술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 방법론, 아동생활지도,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수학지도, 아동미술, 아동안전관리	11과목 (33학점)
	선택 교과목	아동동작, 아동과학지도,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이상
보육 실무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현직 교육에 참여해야만 자격 유지 및 승급을 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현직 교육은 보수교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된다. 현직 교육은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 보수교육의 종류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수교육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II-14>와 같다.

<표 II-14> 보수교육의 종류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영아 보육 직무 교육	장애아 보육 직무 교육	방과후 보육 직무 교육	2급 보육교사승 급교육	1급 보육교사승 급교육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이 있다.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 직무교육과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보육교사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보육교사가 대상이다.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은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원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직무교육은 영아·장애아·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나 원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다.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을 말한다. 보육교사 3급이나 2급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 재직 한 다음 상급 자격 취득에 필요한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형에 따른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다음의 <표 II-15>와 같다.

<표 II-15> 보수교육의 유형과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유형		교육대상	교육 시간	비 고	
직 무 교 육	일 반 직 무 교 육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 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특 별 직 무 교 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 수 하 고 자 하 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승 급 교 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원 장 사 전 직 무 교 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현직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직무교육의 교과목은 <표 II-16>에 제시된 것처럼 보육교사 직무교육은 19개, 원장 사전 직무교육은 21개, 원장 직무교육은 18개이다. 직무교육의 종류와 관계없이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협력, 보육사업의 운영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보육기초 영역의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와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는 필수과목으로 3시간 이상 개설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 일반과정에서 이 두 과목은 「원장의 역할과 윤리」와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라는 4시간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II-16> 일반직무교육의 내용

영역	보육교사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직무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책 동향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보육철학과 윤리 ●의사소통과 갈등관리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이해 ●원장의 역할과 윤리 	10
발달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과 관찰 실제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영유아 부적응 행동 지도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수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발달 지원 ●영유아 생활지도의 관리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뇌 발달과 적기교육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 	4
영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의 운영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실제 ●교수매체의 개발과 활용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정의 운영과 지원 ●보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의 관리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6

영역	보육교사직무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직무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 건강교육과 감염성 질환에 대한 대응 영유아 영양과 급식 관리 실제 영유아 안전관리와 대응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염병과 건강관리 급식 및 영양관리 안전교육과 지도 응급처치와 안전사고 대응 시설·설비 안전관리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건강관리 실제 어린이집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관리 및 대응 	6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이해와 실제 다양한 가정의 이해 및 지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기관 소개 가족과의 파트너십 지역사회 자원과 보육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연계의 실제 	6
보육 사업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리더십과 멘토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 직무의 이해 인사 및 조직관리 재무관리의 기초 평가인증과 사후 관리 운영사례 세미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의 적용과 사례 재무 및 사무관리의 적용과 사례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어린이집 운영 세미나 	8
계	19과목	40	21과목	80	18과목	40

특별직무교육은 모두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시간은 40시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17>과 같다. 영아보육 직무교육과 방과후보육 직무교육은 21과목,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은 20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의 「영아 건강·안전 관리」와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과정의 「장애아 건강·안전 관리」와 「장애아 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과정의 「초등학생 건강·안전 관리」와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해야 한다. 특별직무교육에 개설된 교과목 중 영유아 인권과 직접 연결된 교과목은 보육기초 영역의 「영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가 있다.

<표 II-17> 특별직무교육의 내용

영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사회변화와 영아 보육 영아보육의 이해 영아학대예방과 아동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와 보육 정책 장애아보육의 이해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 후보육 방과후보육의 이해 아동학대예방과 아동 권리 	6
발달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발달의 특성 영아 일상생활지도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이해 교육과 협력 장애 진단과 발달지체 영유아 선별 교육진단과 개별화 교육프로그램 활동참여를 위한 보육과정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발달의 특성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아동 일상생활지도 문제행동 수정과 지도 	8
영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놀이를 통한 감각탐색 및 신체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 사회성 지도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장애아 음악치료 장애아 미술치료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 방안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및 과제지도 친구관계와 생활지도 아동언어교육 아동독서교육 아동예체능교육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법 실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과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1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건강·안전관리 (필수)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 건강·안전관리 (필수)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필수)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4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실제 다양한 가정의 영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 가정에 대한 이해 장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령기 부모 상담 실제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4
보육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보육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보육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보육정보 탐색 	6
계	21과목	20과목	21과목	40

다음으로 승급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급교육의 교육시간은 모두 80시간으로 2급 승급교육의 교과목은 20개, 1급 승급교육의 교과목은 21개로 구성되어 있다. 승급교육에 포함된 인권 관련 교과목은 보육기초 영역에 개설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이다. 이 과목은 2급과 1급 승급교육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II -18> 승급교육의 내용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변화와 보육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의 이해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
발달 및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관찰에 대한 이해 ●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의 이해 ●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의 이해 ● 영유아 선별과 장애 진단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관찰방법과 기록 ● 영유아 인지·언어발달과 놀이지도 ● 영유아 정서·사회성발달과 생활지도 ●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12
영유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0~1세)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2세) ● 연령별 보육프로그램(3~5세)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기초 ●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 ● 영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이해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실제 ● 실내·외 환경구성의 원리와 실제 	20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영양과 식생활지도 ● 영유아 안전지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건강문제와 대응 ● 영유아 급식과 식품안전 ● 영유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12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관계의 이해 ● 다양한 가정의 이해 ●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의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지원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12
보육 사업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 탐색의 방법 ● 보육실 운영관리의 원리와 적용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보 탐색의 실제 ●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자체점검과 사후관리 	12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시험 	
계	20과목	80	21과목	80

한국보육진흥원(2013)은 보육교직원의 현직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 내용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보수교육과정을 발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에서 진행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준보수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의 성격,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의 성격>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은 교사들이 모든 영유아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과목이다. 특히 보육교사로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상적인 보육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거창하고 형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주변의 보육환경이나 교수활동, 훈육에서 교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의미 있는 방법이 된다. 따라서 이 교과목에서는 아동권리와 학대의 이론적 기초를 학습할 뿐 아니라 보육현장에서 권리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의 목표>

1.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영유아의 발달적 과정이나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아동권리의 내용과 구성을 파악한다.
2. 일상의 보육활동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의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인지하고 깨닫고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는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3. 아동학대의 정의 및 학대 유형을 이해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로서의 기초 역량을 기른다.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 역할을 충실히 숙지하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의미와 학대 개입의 전달체계를 명확히 이해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명감과 기초 역량을 배양한다.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교과목의 내용>

대주제	소주제	핵심 개념	주요내용
아동 권리에 대한 기초	아동 권리의 개념 및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의개념 • 아동권리의중요성 	<p>[기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의 의미 이해 • 영유아의 특성과 아동권리의 중요성 이해 • 현대사회와 아동권리의 중요성 이해 <p>[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사상과 배경 파악
	유엔 아동 권리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유엔 아동권리협약의3대원칙 	<p>[기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아동권리협약 배경 및 내용 이해 •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이해 <p>[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협약 원칙 적용 가능성 탐색

대주제	소주제	핵심 개념	주요내용
아동 권리의 민감성 키우기	아동 권리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지도에서 아동 권리침해 언어 사용에서의 아동권리침해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찾기 교사 언어 사용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찾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사례와 해결 방안 모색
	아동 권리 존중의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지도방법과 권리 존중 유아지도방법과 권리 존중 일상 언어에서 권리 존중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의 특성과 바른 생활지도 방법 알기 긍정적 훈육지도방법의 이해와 적용 권리 존중을 위한 교사의 바른 언어사용의 방법 알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교사의 역할 이해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기초	아동 학대의 정의 및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의 법적, 학문적 정의 이해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복학대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이해
	아동 학대의 발생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요인 부모요인 교사요인 사회적요인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부모, 사회적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요인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요인의 상호관계 파악
	아동 학대 후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의 장애 학습의 장애 정서의 장애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로 나타난 후유 장애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후유증과 성인기 발달과의 관계 이해
학대 개입 과정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의무자 신고절차 및 요령 발견하기 협력 및 지원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 교사의 역할 알기 아동학대 징후를 알고 발견 방법 이해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기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의 조기 개입 방법 탐색
	아동 보호 서비스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달체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정 이해 학대 개입 시 전달체계와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전문 인력의 역할 이해

위에서 살펴본 현직 교육 외에 보육교직원이 보육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이 있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연 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형태로 관련 내용을 교육받아야 한다. 둘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연 1회 이상 집합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성폭력 예방교육이다. 보육교직원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 1회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넷째, 부모 모니터링 평가 및 지도점검과 관련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다.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외부 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 어린이집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모두 인정한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행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교육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아동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이다. 이 교육은 2015년 1월 서울시가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것이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성한 강사진이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아동 인권 선임 교사 혹은 원장 소그룹 교육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주로 15명 이내의 소그룹 워크숍 형태로 2시간 정도 진행된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센터 내 ‘아동 인권 상담 전문 요원’을 배치하여 교육하고 있다.

3)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시 실현되는 환경이다. 문용린(2003)은 교육기관에서 학습자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권리 실현에 합당한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을 살펴본 여러 문헌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보육교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아래서 일상적 차별 및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열악한 직무환경은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한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4)에 따르면 열악한 직무환경에 기인하는 보육교직원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은 영유아 학대의 원인 중 하나였다.

(1) 급여부분의 보육교직원 직무환경

보육교사의 처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최윤경, 김재원, 2011). 일반적으로 급여 부분에는 금전적 보수, 수당 등이 포함되며 비급여 부분에는 근로시간, 근로 환경 및 여건 등이 포함된다.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급여가 고졸 여성 근로자의 초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전체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은 4.99호봉, 평균 경력은 4년 5개월, 평균 급여는 약 131만 원이었다. 이는 2013년 우리나라 고졸 여성 근로자(25~29세)의 월평균 급여 1,813,375원(통계청, 201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의 상당수가 전문대학이나 대학 졸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육교사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급여에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근무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급여 편차가 크다는 것이다. 2012년 기준 국공립 보육 시설의 월평균 급여는 1,628,100원이지만 가정 보육 시설의 월평균 급여는 1,154,800원이었다.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가 급여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적된 바 있다(이연승, 최진령, 2013; 임양미, 이명신, 2008; 현미옥, 송순, 2008). 낮은 임금을 포함한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육교직원의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Zaman, Amin, Momjian, & Lei, 2012). 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나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보육의 질이 향상되기도 한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따라서 영유아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급여를 포함한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자격 급수에 따른 호봉 차등 책정, 대체교사 활용의 확대,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유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은설 외, 2009).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한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는 한계가 있다(김근희, 2007).

이연승, 최진령 (2013)은 부산지역 1,200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급여와 근무 환경에 따른 보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상대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는 보육교사가 보육 시설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높은 급여를 받은 보육교직원이 시간 외 수당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급여가 반드시 좋은 직무환경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비급여 부분의 보육교직원 직무환경

비급여 부분의 직무환경에는 근무시간, 휴식시간, 영유아 대 보육교사 비율, 휴가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사업안내를 발간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복무관리 부분을 살펴보면 보육교사는 평일 8시간 근무(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주당 15.1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보육교사의 초과근무는 재직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기관 유형별로 살펴본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국공립 보육시설 9.6시간, 법인 보육 시설 10.8시간, 직장보육시설 9.6시간, 민간 보육 시설 9.7시간, 가정 보육 시설 9.2시간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보육교직원은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최소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육교사 대부분이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60.7%), 휴식공간이 설치된 어린이집이 전체의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보육교사의 하루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은 약 28분 정도였고 1주 총 휴식시간이 평균 2시간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절반 정도는 휴식시간이 없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2012; 최윤경, 김재원, 2011). 게다가 보육교사들은 주로 교실에서 영유아와 함께 점심을 먹기 때문에(72.5%) 따로 점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휴식을 위한 시간과 공간의 부재는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직무환경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하면 보육교직원은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무환경에서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긴 근무시간과 기본적인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보육교사의 피로를 가중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직원의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근무시간은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문동규, 김영희, 허은경, 2012)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데 제한받고 있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연월차, 생리휴가, 보상휴가 등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연월차 및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보육교직원이 실제 사용한 휴가의 종류는 법적으로 이들이 보장받은 휴가의 종류에 비해 적었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보육교직원의 83.3%는 연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실제 연가를 사용한 보육교사는 59.7%에 불과하였다.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출산휴가와 병가의 사용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었다. 교사들의 24.8%와 21.2%는 출산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이들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1.6%와 4.7%에 불과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13)의 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사 중 상당수 역시 연월차 및 휴가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연월차 사용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심지어 본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의견도 70% 이상이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직무환경은 이들의 직무 지속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잦은 이직의 이유가 된다. 보육교사의 약 70% 정도는 최소 1~3회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 2013). 이직의 이유는 낮은 급여, 지나친 업무량과 보육시간, 열악한 처우 등으로 나타났다(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김희태, 이슬기, 김경희, 2014). 보육교직원의 잦은 교체는 수준 높은 보육을 어렵게 하고 결국 영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인권이 실현되는 수준 높은 보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보육교직원의 인권의식 및 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선행 문헌 고찰

보육교사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적요인으로 오랫동안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 인권 실현을 지향하는 여러 연구들도 보육교사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인권의식 혹은 아동권리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관련하여 선행 문헌은 크게 1) 보육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와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육교직원과 유사한 집단인 유치원 교사나 예비 영유아 교사를 조사한 연구도 함께 논의한다.

(1) 보육교직원의 인권·아동권리 인식에 관한 연구

보육교사는 “(영)유아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a, p. 217)을 하는 존재이다. 이들의 인권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실행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은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영유아 교사들은 유아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양순경, 2012; 이명순, 2012).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목과 내용을 잘 안다고 답한 교사는 매우 적었다(이명순, 2012). 이들이 영유아 권리를 접한 경로는 방송 매체, 도서 및 교육 자료, 동료와 교육기관, 인터넷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순경, 2012).

일부 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연령, 학력, 경력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에 따른 인권의식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09b)은 학력, 근무하는 시설유형, 경력, 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차이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류수정(2012)과 양순경(2012)은 교사의 연령, 경력, 학력, 기관의 유형이 아동권리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개인적 변인 중 인권 감수성은 인권·아동권리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송정애, 장정순, 2011). 인권 감수성이 높은 예비교사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는데, 인권 감수성 하위 요인인 상황 지각, 결과 지각, 책임 지각 중 책임 지각이 아동권리 인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권문제가 제기된 상황

에서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지각이 높은 아동권리 인식과 상관성이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4대 권리 중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순경, 2012; 윤진희, 2006; 이명순, 2012).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권리를 방임 및 학대, 최적의 환경, 따뜻한 보살핌, 적절한 의식주와 연결 지어 인식하고 있었다(양순경, 2012). 이는 영유아 교사가 생존권과 발달권 측면에서 영유아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인의 보호와 양육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제한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4대 권리 영역이 고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유아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은 영유아에 대한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b; 이명순, 2012). 예비 영유아 교사들도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남궁선희, 김현정, 2011).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영유아를 위한 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b). 영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즉 교재나 교구와 교사용 활동지침서의 부족으로 인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b). 교사들은 영유아를 위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인권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답하였다(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영유아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남궁선희, 김현정, 2011; 이명순, 2012). 현직 교사들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들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남궁선희, 김현정, 2011). 예비교사들은 학년이나 인권 관련 수업의 이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어린이집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교육의 적절한 시점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점, 재직 중, 보수교육과 기타 재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부모의 무책임한 방임, 학대 및 체벌, 적절한 건강관리 및 위생 미흡, 불규칙한 거주지 이동 등을 유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하였다. 또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과 괴롭힘 역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사례로 교사들은 인식하고 있었다(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예비 영유아교사들은 영유아가 경험하는 인권침해를 따돌림과 괴롭힘, 의사 표현의 부자유, 선택과 결정에서의 제외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영유아들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놀이 금지를 포함한 행동제한, 고립된 공간에서 분리하는 방법, 비체벌의 방법 순으로 인식하였다(남궁선혜, 김현정, 2011).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의 인권의식 혹은 아동권리의식 수준을 밝히고 있다. 검토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 혹은 아동권리 인식을 갖고 있다(이재연, 이소라, 1998; 정오순, 2009). 하지만 원장과 교사들의 개인 변인과 인권의식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예비교사와 현직 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 중에서 보호권에 대해 더욱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양순경, 2012; 이재연, 이소라, 1998; 정오순, 2009). 마지막으로 영유아 교사들은 또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과 괴롭힘, 생존권이나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영유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과 보육교직원

여러 문헌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이 어떤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김성미, 2012; 김정화, 2014; 김진숙, 2009).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은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보살피고 교육하는 보육”(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a, p. 31)의 전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이 밝힌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를 외부의 위협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권리의 실현이 가능하게 하는 보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진숙(2009)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일과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행되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자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과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보육 신념과 행복감, 조직문화와 조직몰입도 등 여러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김성미, 2012; 김정화, 2014; 김태운, 2012). 또한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에 대해 여러 관련자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윤진희, 2006; 이명순, 이은주, 2012).

김진숙(2009)은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 내용을 면담을 통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의 실행 수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연구자는 보육 실행 내용에 대해 조사를 통해 추출한 총 56개의 항목을 내용 타당도 검증을 거쳐 총 40개의 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확정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변인에 따른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의 실행 수준을 분석하였다.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의 실행 수준이 높은 일과는 소집단 활동, 등원,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시간, 전이 시간,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의 순이었다. 반면, 낮잠, 자율성 존중과 특별활동에서는 실행 수준이 낮았다. 교사의 연령, 전공, 근무하는 기관 유형에 따라 보육교사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5세 이상, 전공의 경우 아동보육학 전공자, 근무 유형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 재직하는 경우에 높은 실행 수준을 보였다.

김정화(2014)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26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른 유아 권리 인식과 유아 권리 준중 실행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유아 권리 인식에서 교사들의 경력과 학력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치원 교사들은 생존권을 제외한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권리 인식 전체에서 보육교사에 비해 높은 인식을 보였다. 유아 권리 준중 실행 수준이 높았던 일과는 등원, 정리, 용변, 자유선택활동이었고 자율성 존중, 점심, 낮잠, 특별활동에서는 실행 수준이 낮았다. 유아 권리 준중 실행에서 교사의 경력,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 근무하고 있는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 권리 준중에 대한 인식과 권리 준중 보육 실행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발달권과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들은 일과 준중 실행 수준이 높았고 발달권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 최선의 이익에 대한 실행 수준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보육신념과 행복감,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도가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되었다(김성미, 2012; 김태운, 2012).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실행과 교사의 보육 신념 및 행복감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 중심적인 보육 신념을 지닌 교사는 성인 중심 보육 신념을 지닌 교사에 비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이 높았다. 또한 높은 행복감을 느끼는 교사가 높은 수준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미, 2012). 보육교직원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역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운, 2012). 이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이들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연구는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실천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윤진희, 2006; 이명순, 이은주, 2012). 흥미롭게도 학부모는 교사가 스스로 평가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모의 아동권리의 현장 이행 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순, 이은주, 201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부모는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이용 부모보다 이행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직무 스트레스가 민간 혹은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에 비해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의 인권 이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인권교육

1)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목표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사람들은 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준과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어 자신의 권리는 물론 타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을 존중, 보호, 성취,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방법이며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Levin, 2012).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교육의 목표를 “인간 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제26조)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

르면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내재한 근본적인 권리이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에 부응하는 모든 인권의 효율적인 향유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외에도 주요한 국제규약이나 선언에서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언급한 국제규약 및 선언은 다음과 같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3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9조)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제10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제7조)
-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제1부 제33-34항, 제2부 제78-82항)
-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의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의 선언과 행동계획(선언 제95-97항, 행동계획 제129-139항)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와 같은 어떤 종류의 구별도 없이, 모든 개인에 관한 인권의 신장과 존중”(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 33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과 달성, 그리고 상호 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촉진”(제78조)하는 필수조건인 인권교육을 촉진, 장려, 집중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이후 유엔은 인권교육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교육 10년(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과 행동계획을 선포하였다.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이 인권교육의 목적과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을 지향하는 훈련, 정보의 보급 및 전달 노력으로 정의된다.

- (a)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 (b) 인격의 완전한 개발과 인간 존엄성의 인식
- (c) 모든 국가, 원주민, 그리고 인종적·민족적·종족적·종교적·언어적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적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d)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e)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

2004년 12월 10일 유엔총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14)을 발표하였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앞선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의 인권교육 정의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는 자유 민주 사회에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보장, 평화의 구축과 유지,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의 증진이라는 지향점을 추가로 밝혔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고 각 단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진행된 제1단계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인권교육을 통합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진행된 제2단계는 “고등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교사와 교육자, 공무원, 법 집행 공무원, 모든 계급의 군인을 위한 인권 훈련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1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면 제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양천수 외, 2011). 특히 제1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교사에 대한 초기 혹은 재직 전 훈련, 재직 중 전문성 훈련을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훈련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연구자들도 유엔과 비슷하게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Flowers et al., 2000). Flowers 외(2000)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를 발전시키고 공정, 관용, 존엄성 그리고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게 하는 학습으로 설명하였다. 강순원, 김한민, 백영애(2002)는 인권교육을 “보편적인 인권문화 창달을 위해 적절한 교육 기법을 써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전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인권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p.13)으로 규정하였다. 강순원, 김한민, 백영애(2002)는 인권교육을 “보편적인 인권문화 창달을 위해 적절한 교육 기법을 써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전 사회 구성원을 교육하고 인권 관련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p.13)으로 규정하였다.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2004)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p.17)을 인권교육으로 정의하였다.

2) 인권교육의 내용과 교수법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그리고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재인용; Levin, 2012).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의 인권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의 역사, 인권에 관련한 주요한 국제문서, 인권 실현의 기제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기본적 권리와 권리침해를 이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권을 위한 교육은 가치와 태도에 관련한 인권교육이다. 인권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헌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일상에 내재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 감수성 함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엔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 인권교육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a) 지식과 기술: 인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기제를 배우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함
- (b) 가치, 태도, 행동: 인권 가치를 발전시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태도와 행동을 강화함
- (c) 행위: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시키는 행위를 취함

그리고 유엔이 발표한 연령별 인권교육의 목표와 주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II-19>와 같이 밝혔다.

<표 II -19> 연령별 인권교육의 목표와 주요 개념

단계	목표	주요 개념	실행	세부적 인권문제	인권기준, 제도 및 기제
아동기 초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만3세~7세)	- 자아존중 - 부모와 교사 존중 - 타인존중	- 자아 - 공동체 - 개인책임	의무&공정성 자아표현/경청 소집단활동 원인/결과와 이해 타인의 입장 이해 협력/분담 개별활동 민주주의 갈등 해결	인종차별 & 성차별 불공정성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타인에 게 피해를 주는 것	학급규칙 가정생활 공동체 규범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아동기 후반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생 (만 8세~11세)	- 사회적 책임 - 시민의식 존중 -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 권리와 구분 하기	- 개인의 권리 - 집단권리 - 자유 & 평등 - 정의 & 법치 주의 - 정부 & 안보	다양성의 가치 인정 공정성 사실과 의견 구분 학교 또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	차별/편견 빈곤/기아 불법 민족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수동성	인권의 역사 지방, 국가의 법체계 지방, 국가의 인권 관련 역사 UNESCO, UNICEF 비정부기구(NGO)
사춘기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중학생 (만 12세~14세)	- 세부적 인권에 대한 지식	- 국제법 - 세계평화 - 국제발전 - 국제 정치 경제론 - 국제 생태학	다른 관점에 대한 이해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인용하기 연구 수행/정보수집 정보 공유하기	무지 & 무관심 냉소주의 & 정치적 억압 식민주주의/제국주의 경제적 세계화 환경 악화	UN 규약 인종차별 철폐 성차별 철폐 UN 난민고등판관 지역별 인권협약
청소년기 (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여)					
고등학생 (만 15세~17세)	- 보편적 기준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 인권을 개인의 인식과 태도에 통합하기	- 도덕적 편입/배제 - 도덕적 책임/이해능력	시민단체 참여 시민적 책임 완수 시민불복종운동	대량학살 고문 전쟁범죄	제네바 협약들 전문 협약들 인권기준의 변천

<출처: 유엔인권고등판관실(2006).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대상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수준이나 학습자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에는 인권과 인권교육의 정의, 인권의 역사적 맥락, 기본적인 인권 문서, 인권 관련 주요 이슈와 사건 외에도 교육과정 내의 인권이나 인권 옹호를 포함되어야 한다(Flowers & Shiman, 1997).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경험, 즉 인권을 통한 교육이어야 한다. 제1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이 “교육에서의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권리 실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2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양질의 인권교육 교수-학습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 (i)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며, 인권과 부합되는 교수 방식, 예를 들어 각 학습자의 인권, 존엄성, 자존감을 존중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 (ii) 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학습자 중심의 방법 및 접근법과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반성을 개발시키는 활동을 채택한다.
- (iii) 학습자가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습 참여자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적 학습방법(공동체 연구나 공동체 활동 등)을 도입한다.
- (iv) 인권교육을 수립할 때 습득해야 할 인권 기술과 능력을 명확하게 정하고 인지적(지식과 기술), 사회/정서적(가치, 태도, 행동) 학습결과에 동일한 비중을 둔다.

강순원, 김한민, 백영애(2002)는 학습자의 인권이 실현되는 인권교육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가장 먼저 인권교육은 교육에 관련된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주요한 인권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탐구하고 토론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장체험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갈등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Flowers와 Shiman(1997)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은 존중, 정의, 참여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도덕교육을 위한 5E(explanation,

example, exhortation, experience, environment)를 바탕으로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할 때 자신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수법도 참조한다. 이 때문에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은 교수법도 섬세하게 고안될 필요가 있다.

- 설명(explanation): 인권 관련 이슈와 주제에 대한 검토와 지적인 이해
- 사례(example): 인권 활동의 모델을 구체화하고 적용
- 권고(exhortation): 인권 원칙에 따른 행동을 요구
- 경험(experience):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
- 환경(environment): 인권 원칙에 기반을 두는 학급과 학교문화를 건설

유엔은 학교인권길라잡이(2004)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사실과 기본 요소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인권 관련 사실과 기본 요소에 “자신들의 생활 경험의 기반 위에서 접근”(2004, p.28)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독립적인 연구·분석 및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참여적 방법론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된 인권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궁극적으로 행동양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권을 위한 책임감이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권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은 <표 II-20>과 같다.

<표 II-20> 인권교육 교육방법

기법	내용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이론적이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하나의 주제가 제시되면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 수정, 삭제하는 과정을 거침
사례연구 case study	학습자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인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실제 또는 상상의 사례를 연구
창의적 표현 critical expression	이야기, 시, 그래픽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 등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표현
토론 discussion	두 사람, 소집단 혹은 전체가 하나의 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 field trips/community visits	인권과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법원, 출입국 관리소 등)이나 단체(비영리단체, 무료 진료소 등) 등을 방문

기법	내용
인터뷰 interview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활동가, 지도자 등 인권 관련 사건 목격자의 경험을 청취
연구 프로젝트 research projects	학습자가 관심 두는 주제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
역할극/시뮬레이션 role-playing/simulation	인권 관련 상황을 짧은 이야기나 상황극의 형식으로 표현
시각자료 visual aids	칠판, OHP 포스터, 전시물,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자료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2013)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방법 외에도 이미지 학습, 단어 연상, 소집단 협력학습, 질문학습, 신문 활용 교육(NIE) 등을 인권교육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각 교육방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 -2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가 제시한 인권교육 방법

기법	내용
이미지 학습	자신의 고유한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떠올려 특정한 학습주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것
단어 연상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 것
게임 학습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주면서 성취를 도모하는 것
소집단 협력학습	소집단(모둠)을 2인, 4인, 6인 등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여하여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질문학습	확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신문 활용 교육(NIE)	신문을 활용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방법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Flowers & Shiman, 1997). 강사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수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의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대신 소집단 프로젝트, 일대일 토론과 면담, 신체적 활동, 자기표현이나 문제 해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언어적 표현 외에 학습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예술, 드라마, 동작, 음악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표현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인권교육의 사례

(1) 국내 인권교육의 사례

노희정(2008)은 개념분석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일상의 사건과 인권을 연결 짓고 동시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인권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의식은 인권 감수성, 인권 판단력, 인권 동기화, 인권 옹호 행동 등의 네 가지 심리 과정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상황 지각 능력, 결과 지각 능력, 책임 지각 능력으로 구성된 인권 감수성(human rights sensitivity)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⁶⁾ 이 프로그램에서 교사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념분석 수업모형은 모두 여덟 단계로 구성되는데 노희정은 이들 각 단계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제시한 네 단계의 인권교육 모듈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2> 개념분석 수업모형에 기초한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념분석 단계	인권 학습절차	인권교육 내용
개념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구분하는 단계 개념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사태를 확인하는 단계 개념의 전형적인 사태 확인하기 개념에 반대되는 사태를 확인하는 단계	자신의 권리 인식하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연관시키기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개념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단계 관련된 개념 혹은 사태를 제시해 보는 가상적인 사태를 상상하여 검토하는 단계	인권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인권침해의 양상과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과 상황을 지적 인권침해 경험을 공유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
분석된 결과로 얻어진 개념의 의미를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비추어 검토하는 단계 분석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단계	인권을 존중·보호·증진하기	인권을 존중·보호·증진할 책임이 있는 개인과 조직을 조사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행동계획 수립
초등학교 수준에서 다소 부적절함	국제적 유대하기	

6) 상황 지각 능력은 특정한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결과 지각 능력은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정서 인식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책임 지각 능력은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지각 능력으로 인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의지이다(노희정, 2008).

문미희(2005, 2006)는 예비교사의 인권의식 및 인권 옹호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Rest의 도덕성 4구성 요소 모형을 근거로 인권의식과 인권 행동의 심리적 과정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 4가지 구성요소는 인권 감수성, 인권 추론 능력,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 행동 실천력이다. 구성요소별로 제안된 과제 특성과 교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23> Rest의 도덕성 4구성 요소 모형을 근거로 한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요소	과제 특성	교수 목표
인권 감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상황의 지각 • 주인공의 행동이 미치는 결과 예측 •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 지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할 수 있다. • 인권 관련 상황에서 주인공의 행동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인권 관련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행동할 책임이 있다고 지각할 수 있다.
인권 추론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행동 방안의 모색 • 인권옹호적 행동 방안의 선택 • 인권옹호적 행동 방안의 선택 이유 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관련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인권 관련 상황에서 인권옹호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인권옹호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인권가치에 대한 동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가치와 여타 가치들을 비교 • 인권 가치의 선택 • 인권가치에 기초한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가치와 경쟁하는 다른 가치들을 비교할 수 있다. • 다른 가치들보다 인권 가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인권 가치에 기초하여 인권옹호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권 행동 실천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실천을 강화하는 성격 특성의 모색 • 인권 실천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의 모색 • 인권 실천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 극복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행동의 실천과 관련된 성격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 인권 행동의 실천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 인권 행동의 실천을 방해하는 성격 특성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예비교사들에게 교직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처치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각 2주 그리고 8주 동안

진행된 8회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전통적 강의 방식의 인권교육을 받은 집단 혹은 인권과 윤리에 관련된 교직과목을 수강한 집단에 비해 인권 감수성, 인권 추론 능력,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 인권 행동 실천력 등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었다. 즉 딜레마 토론 방식의 인권교육이 예비교사들의 인권 옹호 행동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설규주(2005)는 실천, 체험,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 지향적 인권교육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은 사회참여 체험활동의 문제 인식, 문제 분석, 대책 수립, 실천, 평가의 다섯 단계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에 적절하게 수정·확장되었다.

<표 II-24> 참여지향적 인권교육 모형

단계	인권교육 내용
구체적 사례 속에서 인권 문제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반인권적 문제 발견 ● 문제를 개선·예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가장 절실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인권 문제 선정
인권 관련 문제 분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의 영역 파악 ● 인권 침해의 원인과 양상 분석 ● 피해자와 가해자 확인
인권 관련 대책 수립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설정 ● 학생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 설정 ● 선택한 활동들의 결과에 대한 예측과 유사한 사례 검토 ● 개인 및 학급(학교) 구성원의 역할 분담
인권 신장을 위해 실천에 옮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침해의 주체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전달 ● 언론 기관이나 캠페인 활동을 통한 인권 침해 문제의 공론화 ● 학생의 실천목표 및 방안과 관련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조 ● 자원봉사활동 실시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과 동료들의 활동에 대한 반성

주효경, 이광자, 김현숙(2013)은 54명의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정신 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인권 감수성 훈련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신간호사가 전체 환자의 안전 관리를 우선시하는 관습적 태도와 행동으로 인해 낮은 인권의식을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감수성 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실험집단에 속한 정신간호사들은 행동의 개선을 유

도하는 대인관계 증진 기법으로 시행된 인권 감수성 훈련을 사전과 사후검사를 포함하여 총 6회기 받았다. 구체적인 인권 감수성 훈련 내용은 <표 II-25>와 같다. 인권 감수성 훈련을 받은 정신간호사들은 인권의식이 높아졌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태도 중 권위주의, 사회생활 제한, 지역 정신보건 개념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5> 대인관계 증진기법을 바탕으로 한 정신간호사를 위한 인권교육

회기	주제	인권교육 내용	교육방법
1 (60분)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소개 사전검사 	설명 사전 검사지
2 (120분)	인권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감수성은 무엇인가? 차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기 - 인권 감수성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기 - 인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해를 찾기 	토론 & 발표
3 (120분)	당신과 나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일에 따라 서기 우리의 몸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이, 차별, 그리고 편견을 이해하기 - 우리 몸의 여러 부분과 인권을 연결 짓기 정신보건의료기관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토론 & 발표
4 (120분)	정신보건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침해의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이름 만들기 - 토론 분위기 형성하기 -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토론 & 발표
5 (120분)	모니터링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의 인권 선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언 슬로건, 임무, 행동강령 등 	토론 & 발표
6 (60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및 평가 사후검사 	평가 사후검사

서혜정, 김진숙, 서영숙(2010)은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6주에 걸쳐 문제 중심 학습 방식으로 권리 감수성을 향상하는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예비교사들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된 시나리오를 읽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반성적 저널을 기록한다.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시나리오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관찰된 사례를 바탕으로

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일과 계획, 게임 활동, 자리 및 순서 정하기, 요리활동, 자유선택활동 영역, 견학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예비교사들이 읽은 시나리오의 한 예이다.

누가 예쁘게 앉아 있지?	
시나리오	<p>자유선택활동 시간이 끝나 모여 앉아 있다. 다음 시간은 간식시간이다. 한꺼번에 유아들이 손을 씻으러 가게 되면 혼잡할 것이다. 한권리 교사는 간식을 먹기 위해 손을 씻을 때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예쁘게 앉은 사람 먼저 손 씻으러 갈 거예요. 누가 예쁘게 앉아 있지? (교사는 노래에 맞춰 유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준다) • 교사: 예쁘게 앉아 있는 친구 누굴까? 랄랄랄라 박주연, 최재민, 이소라, 김현정, 이지우...이은성 <p>유아들이 한 명씩 손을 씻고 와서 정해진 자리에 와서 앉는다.</p>
내용 토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2.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3. 이 장면에서 힘은 누구에게 있나요? 교사는 왜 유아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을까요? 4. 교사의 힘을 행사하지 않고 유아가 주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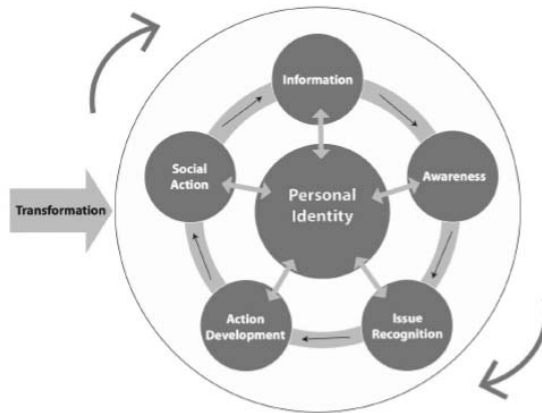
문제 중심 아동권리교육 이후 예비교사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교수 학습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하였다. 보호권과 생존권에 관한 관심과 비교하여 학교 현장에서 영유아의 참여권 보장이 제한적이었던 지적을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결과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인권교육이 학습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국외 인권교육의 사례

Teacher Compendium for Human Rights Education(TCHER)은 덴버대학(University of Denver)의 사범대학에 1997년 설립된 영재발달연구소에서 발간되었다. 이 연구소는 정책 수립자, 교육가, 부모들의 영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수준 높고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교육과정, 훈련, 자료를 보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TCHRE의 서문에서 연구소는 학생들이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현하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TCHRE는 인

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는 인권 관련 문제를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형태로 제시한다. TCHRE는 인권의 정의, 인권교육 모델, 인권교육의 실천방법,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에는 학령 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TCHRE가 제시하는 인권교육 모델은 개인의 정체성(personal identity), 정보(information), 지각(awareness), 문제 인지(issue recognition), 행동 개발(action development),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요소로 구성된 인권교육모델의 전반적인 목적은 변혁(transformation)이다. 이들 요소가 작동하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1] TCHRE가 제시한 인권교육 모델

TCHRE는 학습자가 인권교육 모델의 각 요소를 순환적으로 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습자의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정체성은 옹호 기술, 자존감, 자기 지각, 개인적 신념,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이해나 실천,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정체성은 인권교육 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데 같은 인권교육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정체성에 따라 정보, 지각, 인식, 행동 개발, 사회적 행동을 거쳐 목적에 도달하는 이동 속도와 양상은 다르다. 또한 학습자는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인권문제에 따라 목적에 도달하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학

습자는 차별에 관련한 인권문제는 민감하지만, 환경과 관련한 인권문제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TCHRE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학습자의 삶의 맥락과 인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으로 참여적인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을 교실에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 관련 도서나 영화, 최근 발생한 사건, 지역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교실에서 발생한 갈등 등이 교육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로 알려진 앰네스티는 학교 인권교육 프로젝트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차별 없는 인권 향유가 가능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 인권단체로 비영리단체이다. 1961년 영국의 변호사인 피터 베넨슨이 주도한 사면을 위한 탄원 1961을 시작으로 그 활동이 시작되었다. 영국에 본부가 있으나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부 및 동부 유럽과 남아메리카와 중동에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여 70여 개 개별 국가의 앰네스티 지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정부나 기업 등 주류 집단에 인권 관련 국제법을 지킬 것을 촉구·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약 150개국의 700만 회원과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여러 집단 대중에게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유엔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제1단계에 부응하며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 프로젝트는 앰네스티의 포괄적인 학교 인권교육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권문화가 광범위하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인권친화적 학교 프로젝트 안내서(Becoming a Human Right Friendly School: A Guide for Schools around the World)를 2012년에 발간하여 프로젝트의 실행을 돕고 있다. 이 자료는 현재 국제 앰네스티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안내서는 크게 인권친화적 학교의 필요성,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학교의 주요 영역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행정, 관계, 교육과정 및 특별활동과 학교 환경에 걸쳐 10대 원칙이 통합되어야 한다. 안내서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영역별로 구성원들이 고려할 점과 실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한다.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는 인간 존엄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교육 자료집이다. Module one-Poverty and Human Rights와 Module Two-Housing and

Human Right가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교육모듈은 빈곤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모듈에는 촉진자 매뉴얼 (facilitator manual)이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듈은 15세부터 22세 사이의 학습자에게 적합하며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교육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모듈은 참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제시된 여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권리를 인지·주장·실현하고 타인을 위한 인권옹호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인권위원회(The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OHRC)는 온타리오의 인권규정을 가르치기 위해 Teaching Human Rights in Ontario(THRO)를 발간하였다. 온타리오 교육부는 교육체계에 인권이 뿌리내리게 하는 목적으로 평등과 통합교육 전략을 사용하여 교육현장의 훈육방식에 변화를 이끌었다. 온타리오의 중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THRO는 학생용 자료를 포함한 교사용 지도서이다. 이 지도서가 밝히는 인권교육의 목적은 우선 학습자가 온타리오 인권규정과 온타리오의 인권 체계의 중요한 세 개의 기관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온타리오 인권규정이 포함하는 토대와 사회적 영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THRO에 따른 인권교육을 통해 차별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규정을 토대로 차별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과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타인을 돕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교사용 지도서는 차별의 개념 살펴보기, 인권 퀴즈, 온타리오 인권규정의 범위, 차별의 유형, 인권 퀴즈에 대한 답, 학생들에게 인권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다수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III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1. 인권교육 프로그램 분석
2. 요구분석

1. 인권교육 프로그램 분석

1)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영유아가 누리는 권리 수준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역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친화적인 보육현장 조성에 보육교직원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연구·개발된 바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장에 적용가능하고 효과적인 교재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검토의 대상은 보육교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보육교직원과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목표	보육현장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개선, 아동 인권에 대한 민감성 향상
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 생존, 발달의 원칙, 의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방법	강의(PPT: 이론, 사례), 인권 민감성을 위한 3가지 사례 제시 후 토론 및 해설(영유아 권리존중의 입장), Q & A 등 2시간으로 운영

2

**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목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바람직한 인성함양
내용	인성의 정의 및 인성 덕목의 이해, 보육교직원의 인성의 중요성, 인성을 다지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보육교직원의 태도 및 역할, 자기조절 능력 향상(분노의 정의 분노 조절하기), 교사와 아이의 상호작용 증진(아이와 통하고 싶다)
방법	강의, 인성 진단 테스트,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기 체크, 분노 성향 및 어린 시절 체크, 자신의 성격 구조 이해를 통한 학대 예방 교육
특징	영유아 인권 존중을 통한 교사의 인성 진단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직원 자신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3

**아동학대자 교육명령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한국보육진흥원, 2013)**

목표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보육역량 증진
내용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아동 인권 감수성 향상,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감정조절 능력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지식, 태도,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 아동학대 가해 보육교직원의 체벌과 훈육의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고 아동권리 존중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
방법	소그룹 활동과 사례 위주의 학습자 참여 중심 프로그램(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습자 자발적 참여 위한 소그룹 활동으로 운영, 아동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아동학대 이해 증진 위해 구체적인 지침 및 사례 제시, 구체적인 사례 토대로 학습자 간 토의로 바람직한 지도방법 및 기술 확립)/아동권리와 아동학대의 이해 10시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12시간, '보육교사의 자기 이해' 12시간, '아동학대의 유형 및 사례' 6시간 총 40시간으로 구성
특징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접근함. 교과목 개요, 교과목 세부내용 등을 통해 이론 익히게 한 후 해당 수업내용에 활동 예시안 제시(보육교사 소규모 워크숍)

4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

목표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유아교사가 아동의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와 존중을 통해 이를 실천하는 적극적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 이를 위해, 아동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정보 습득, 아동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인권 감수성 향상, 아동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과 보육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교사 역할 인식, 아동 인권을 보호, 존중, 실현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환경 구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내용	아동이란, 아동 인권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주제별 아동 인권(아동의 안전사고 및 유괴, 납치, 실종, 아동학대와 방임, 버릇없음에서 참여로, 유아교육의 목표 및 놀 권리), 아동 인권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
방법	민주, 참여식 방법을 통해 일방적 강의 지양, 참여자와 진행자 모두가 함께 의견 공유, 토론할 수 있는 민주, 참여식 훈련 방법 권장, 활동 참여를 위해, 강의형, 활동형, 발표형, 토론형, 혼합형의 수업을 적용/ 상호 연계와 독립적 구성: 모듈-회기-활동의 구조, 각 모듈과 회기, 활동은 긴밀한 상호 연계를 지닌 프로그램, 하지만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진행자가 적절한 활동의 배합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가능/활동시간은 1차시 평균 40분 기준(짧게는 30분, 길게는 60분)으로 총 23차시 활동 운영
특징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 환경에 따라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발, 강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가자의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자, 참여자, 교사가 속해있는 기관장,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 통해 '변화된 인식과 태도의 분석' 참가자 대상 '교육에 대한 피드백' 참가자 '피드백의 적절한 해석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5

**예비교사 대상 아동 인권 교육의 실태, 필요성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2012)**

목표	예비교사 대상 아동 인권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인권 감수성, 인권 추론 능력 발달, 인권 가치에 대한 동기화 발달, 인권 행동 실천력 발달, 인권옹호 행동 잠재적 발달을 도모함
내용	아동 인권 개념(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 아동 인권 행동 실천력 향상 교육, 아동 대상 권리 교육 학습 내용 및 교수법 교육
방법	인권 딜레마 토론(8가지 딜레마 제시), 인권 감수성 촉진 질문 제공(인권 사태의 지각 및 해석 경험), 인권 추론 능력 촉진 질문 제공(인권옹호 행동 방안의 추론 경험), 인권가치 동기화 촉진 질문 제공(인권, 비인권 가치의 중요도 비교 경험), 인권 행동 실천력 촉진 질문 제공(인권 행동 실천 관련 성격특성의 탐색 경험)
특징	4구성요소 발달 촉진 질문(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을 통한 인권교육을 도모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세이브더칠드런, 2009)**

6

목표	영유아기 인권교육 강조, 영유아의 성장환경의 중요한 일부인 보육시설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해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서의 생활 전반을 통해 영유아 권리 실현되도록 해야 하며,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유아 권리교육 및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표로 함
내용	유아의 권리(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중요성(영유아기 발달적 특징, 현대사회의 특징과 관계), 유아 권리 존중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의 감수성 향상(교사 권리 감수성, 보육시설에서 권리 실천 성찰 방법),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아동 의사 표현, 의사 표현 자유, 정보와 자료 접근, 부모의 양육 책임, 폭력 학대 착취로부터 보호, 교육권, 교육의 목표, 휴식,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참여, 권리 알 권리
방법	브레인스토밍, 창의적 표현, 토론,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 역할극/시물레이션, 동화 만들기, 인형극, 사진이나 그림, 멀티미디어 활용, 교구 활용)
특징	유아 권리 존중 보육환경 조성(보육시설 환경 및 일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원), 동화 활용, 문제 중심 학습 접근, 유아 권리 존중 실천 사례, 유아 권리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방법, 유아 권리 주제 교육 접근법(1. 표준보육과정 속의 유아 권리 주제 활용, 2. 아동권리협약 주제 관련 동화와 교구 활용, 3. 일상생활 사례 활용, 4. 통합적 접근: 프로젝트 접근법)

**학교 인권교육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2006)**

7

목표	초중등학교 인권 학습 활동 안내서로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의 일환, 즉 국제사회가 인권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협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의 틀 제공
내용	신뢰와 사회적 존중, 갈등 해결하기, 차별에 대처하기,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자신감과 자부심 키우기, 신뢰 쌓기, 학급규칙 정하기, 인권 이해하기, 아동의 권리 소개하기(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인권교육 주제 중심)
방법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실제 또는 가상 사례: 2~3개의 신빙성 있고 현실적인 시나리오), 창의적 표현: 이야기, 시,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나는 누구일까 책, 나 그리기), 토론(어항 토론 등, 말하는 원, 돌아가며 말하기, 토론 거미줄), 현장견학 및 지역사회 방문: 법원, 교도소, 출입국관리국, 비영리단체, 무료 진료소, 인터뷰(가족, 구성원), 연구 프로젝트: 독립적인 조사(도서관 이용), 개인과 집단 프로젝트, 역할극 및 시물레이션, 소규모 연극(짧은) 역할극 후 토론, 시각자료: 포스트, 사진, 비디오, 영화,
특징	기존의 교과목에서 인권문제를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 인권교육교사가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고민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8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목표	예비교사들의 아동 인권 의식 및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 파악, 아동 인권교육 내용 제시, 선생님들이 인권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인권교육을 위한 수업 원리 및 방법 안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을 목표로 함
내용	인권교육의 기초, 학교 인권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학교 인권교육 시행 방안 및 예시(인권교육 시행의 기본 방향, 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교육 시행 방안, 학교 인권교육 수업 활동 예시), 인권교육을 위한 환경, 핵심 개념(자기 존중의 태도,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 생명 가치에 대한 존중)
방법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와 인권교육을 위한 수업 원리 및 방법 안내(인권에 대한 교육과정 설명 및 교사용 지도서)
특징	유치원에서 다루어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 제시(자신, 주변의 친구와 생물체에 대한 존중)

보육교직원과 교원 대상을 위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이 개발·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국가인권위원회, 2011),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세이브더칠드런, 2009)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보육교직원의 인성 함양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 교육(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과 아동 학대자 교육명령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한국보육진흥원, 2013) 등이 인권교육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예방이라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육현장에 적용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영유아 인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5)는 영유아의 권리 실현이 이들의 발달적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 역할이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영유아의 인권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낮설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육교직원에게 보육과 인권의 교차점을 발견하고 자신이 수행한 보육의 의미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인권실현을 자신의 직무로 받아들이고 소극적인 의무이행자가 아닌 적극적인 영유아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셋째, 기존 프로그램은 여러 유형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제안한다.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시 말하면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인권의 가치와 개념을 보다 내면화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의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에서의 변화를 끌어내려면 학습자의 실생활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함양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일상을 인권 관점에서 조망하고 자신의 행동이 영유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스스로 인권친화적 보육의 지침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방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은 인권과 영유아 인권을 비롯하여 보육과정내의 인권과 인권 옹호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현장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안전, 인성 및 학대와 같은 주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은 보육현장의 긴박한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이 될 수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인권교육은 학습자 자신의 인권에서 출발하여 타인의 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의 인권을 옹호하는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앞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는 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의무이행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인권 관점에서 보육현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보육과 영유아의 인권이 별개가 아니며 보육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직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의 인권실현에 대한 책임지각은 이들이 일상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과 보육의 교차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육활동의 편성·운영 지침을 인권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유아의 보육의 토대가 되는 철학 혹은 이론,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표준보육과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유아 인권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인권교육은 보육교사가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인 보육교사의 역할을 스스로 모색할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인권 관련 갈등이나 문제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마련하여 제공하기는 어렵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 사이의 권리 충돌이나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직원의 책임과 의무가 충돌할 때 다수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일과를 운영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성찰과 토론을 거치며 보육교직원은 관련된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인권친화적 보육방법을 찾을 수 있다.

종합하면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이 보육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보육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 및 영유아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영유아 인권 관점에서 보육을 탐색하고,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인권옹호자로 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 및 적용된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교재 그리고 2014년 시행된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을 요약 및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군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 2008)

목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정당한 권리이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주는 기본 요소이므로, 국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 역시 군복 입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누리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고, 병영생활 전반에 걸쳐 생활화될 때 장병 개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병영에 정착될 것이라는 취지에 따라 국군장병의 인권 신장과 감수성 향상을 위해 개발
내용	인권의 중요성 이해(인권의 개념, 현대사회와 군대의 인권, 군인의 인권), 병영에서의 인권 실천하기(전쟁·분쟁과 군 인권, 지휘권과 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적 영역을 존중받을 권리, 건강과 휴식의 권리, 징계 및 형사 절차와 인권, 징계 및 형사절차와 인권), 인권 침해 구제 절차(인권침해 구제 제도와 이용방법),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기술
방법	프레젠테이션과 토론, 패널 토론, 브레인스토밍, 입장 바꿔 이야기하기, 역할극 및 시뮬레이션, 사례 연구, 글, 그림 등을 통한 창조적 표현, 게임, 이미지 해석, 극화, 활성(쌍방향식, 유연성, 관련성, 다양화를 /기준 제시, 참여적 방법 적용, 핵심 파악과 적용)

2

군·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과정 목표	군, 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에 대한 이해 제고, 군, 경찰 인권 관련 제도의 이해, 군과 경찰 인권 침해 진정 사례 소개 및 예방 방안 논의
교육대상	육, 해, 공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교육 기간	1박 2일(합숙)
교과목	소양분야(몸풀기, 마음 풀기, 너 나 힐링 찾기), 직무분야(인권의 이해, 군·경찰 인권 진정사례, 군·경찰과 인권, 명사특강, 인권영화 들여다보기)
시간	강의식(7시간), 참여식(4시간), 기타(2시간)

3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9)**

목표	단순히 기존의 출입국관리법령을 해석하여 업무지침으로 삼기보다는 현행의 헌법, 인권조약,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바탕을 두면서도 보다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업무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즉 외국인의 입국, 체류, 출국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해 개발
내용	인권의 개념, 외국인의 법적 지위, 각국의 이민정책 및 퇴거 관련법, 외국인의 입국과 인권, 외국인 단속과 인권, 외국인 보호와 인권, 외국인의 출국과 인권
방법	학습 목표, 생각해볼 문제, 제시된 각각의 쟁점에 대한 설명을 통한 강의 및 토론 전개, 쟁점 이해를 위한 조사통계, 판례, 신문기사 자료 제공

4

**다문화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과정 목표	다문화 관련 지자체 공무원,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공무원 종사자의 인권의식 증진을 통한 현장에서의 인권실천 도모, 이주민 인권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고양
교육대상	다문화 관련 지자체 공무원, 종사자
교육 기간	1박 2일(합숙)
교과목	기본교육(인권과 마음 열기, 인권의 이해와 침해·차별 사례, 인권영화 감상 및 토론), 직무분야(이주민 인권과 국내외 정책, 이주민 인권 쟁점 및 사례, 다문화 분야 인권 비전 수립)
시간	강의식(8시간), 참여식(3시간), 기타(2시간)

5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국가인권위원회, 2008)**

목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생활노인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갖추고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실천 지원
내용	인권에 대한 기본 이해, 노인 인권의 이해, 노인복지시설의 인권 이해, 건강권, 주거권, 인간 존엄권 및 경제·노동권, 정치·종교·문화생활권, 교류·소통권, 자기결정권
방법	인권 이슈, 인권 사례, 인권 규범 및 기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지침 제공

6

노인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과정 목표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현장에서의 인권실천 도모, 인권 친화적 고령화 사회를 위한 시설 종사자와 노인 당사자의 인권의식 증진
교육대상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와 관계자
교육 기간	1박 2일(합숙)
교과목	기본교육(인권과 마음 열기, 인권의 이해와 침해-차별사례, 인권영화 감상 및 토론), 직무 분야(노인 인권과 국내외 정책, 노인 인권 쟁점과 사례, 노인 분야 인권 비전 수립)
시간	강의식(8시간), 참여식(3시간), 기타(2시간)

7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아동용)
(국가인권위원회, 2006)

목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강한 통제와 보호 요소에 의하여 인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생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시설 장 개인의 신념에 맡기는 것이 아닌, 법적 제도의 정비, 사회적 인식의 전환,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지침 제공
내용	인권의 의미와 유형, 인권보장을 위한 국내외 규정, 장애인 생활시설과 인권, 장애인의 평등권, 생존권, 자유권, 사회권, 권리구제
방법	인권지식 향상 단계(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특수성 이해)와 현장 적용 단계(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 쟁점 영역 이해)의 두 단계로 구성

8

장애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과정 목표	인권 친화적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 감수성 향상, 장애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증진 도모, 장애 분야 인권 강사를 양성하여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정착
교육대상	장애인 시설의 종사자(시설장, 인권지킴이, 지자체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교육 기간	1박 2일(합숙)
교과목	소양 분야(인권의 이해, 인권영화 들여다보기), 직무 분야(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이해,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 토의, 장애인 복지정책 이해)
시간	강의식(9시간), 참여식(4시간)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와 2014년 시행된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과 경찰, 다문화(출입국), 노인, 장애 분야와 같은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은 해당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의식 강화 및 인권 감수성을 증진에 목표로 두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일반적인 인권의 의미,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과 법률, 해당 분야 관련 시설에 대한 인권, 그리고 시설 종사자 및 대상자들의 인권 유형과 이들의 인권 보호, 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 자신의 인권과 이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대상자인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2. 요구분석

1) 설문조사

(1) 연구 대상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지가 이 연구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하였다. 경상북도 P 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교사 중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15명의 교사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5명이 예비조사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설문 문항의 적합성, 검사 소요시간, 문항의 난이도 및 이해도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비조사 후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18일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은 2014년 31일을 기준으로 한 2015년 보육통계를 기초로 전국 단위 시도별과 지역 규모별(대도시, 시군구, 읍면리) 보육교직원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 할당하여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경기권, 경남 및 경북권, 전남 및 전북권, 충남 및 충북권, 강원권에 소재한 어린이집으로 우편으로 직접 배부하거나 지역별로 개최된 보육교직원 교육에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포된 총 650부의 설문지 중 59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충실하게 응답한 57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75명(99.8%), 남자가 1명(0.2%)이었고 연령은 41~50세가 135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21~25세가 114명(19.8%), 26~30세가 112명(19.4%), 36~40세가 95명(16.5%), 31~35세가 68명(11.8%), 50세 이상이 52명(9.0%)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지역별 분포와 이들의 최종학력과 전공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소재한 지역은 서울 및 경기권이 284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및 경북권이 127명(22%), 전남 및 전북권이 82명(14.2%), 충남 및 충북권이 68명(11.8%), 강원권이 15명(2.6%)이었다. 최종학력은 전문대학이 271명(47%), 4년제 대학교 194명(33.7%), 고졸 69명(12%), 대학원 석사 이상 42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전공을 조사한 결과 유아교육학 전공자가 243명(42.2%)이 가장 많았고, 타 분야 전공이 115명(20%), 사회복지학 65명(11.3%), 영유아보육학 59명(10.2%), 아동복지학 50명(8.7%), 아동학 44명(7.6%)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보육교직원 경력을 보육교사 경력을 가진 자와 원장 경력을 가진 자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참여자 576명 중 보육교사 경력이 3년~5년 미만이 135명(2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3년 미만이 114명(19.8%), 9년 이상이 101명(17.5%), 5년~7년 미만이 97명(16.8%), 7년~9년 미만이 72명(12.5%), 1년 미만이 57명(9.9%)의 순서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 중 91명이 원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장 경력이 3년~5년 미만이 23명(25.3%)으로 가장 많았고, 5년~7년 미만이 20명(22%), 1년~3년 미만과 9년 이상이 각각 14명(15.4%), 7년~9년 미만이 13명(14.3%), 1년 미만이 7명(7.7%)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최초로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취득한 기관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에서 최초 보육교직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255명(4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년제 대학이 109명(18.9%), 보육교사 교육원 108명(18.8%), 평생교육원이 67명(11.6%), 학점은행제가 30명(5.2%), 대학원 이상이 7명(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초 취득한 자격증이 보육교사 2급인 경우가 468명(81.3%)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3급 73명(12.7%), 원장 33명(5.7%), 특수교사 2명(0.3%)의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가 설문조사 당시 소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증의 종류와 현재 직급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중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186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 174명(30.4%), 보육교사 2급 169명(29.5%), 보육교사 3급인 43명(7.5%)의 순이었다. 연구 대상자 중 211명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유치원 교사 2급을 소지한 경우가 168명(80%)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 교사 1급 31명(14.3%), 원장 11명(5.2%), 원감 1명(0.5%)이 뒤를 이었다. 현재 직급은 보육교사가 494명(85.8%)으로 가장 많았고 원장 79명(13.7%), 특수교사 3명(0.5%)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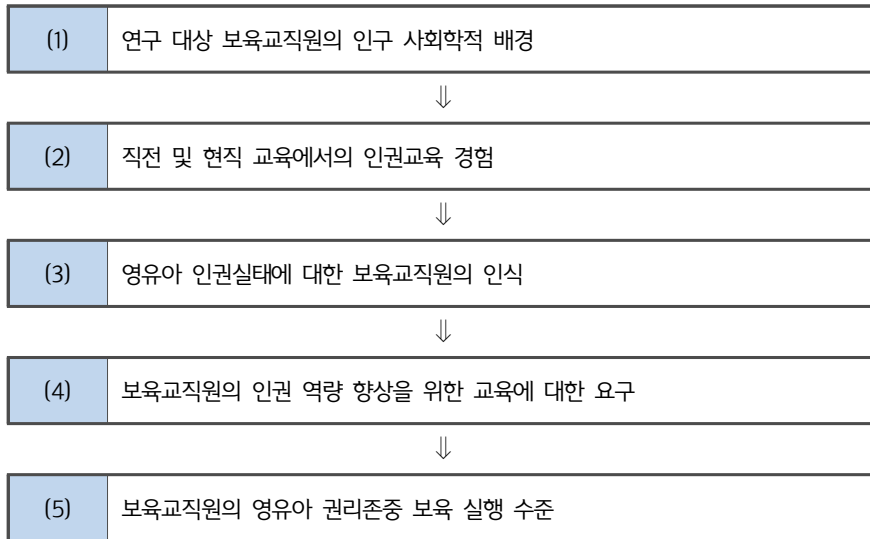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유형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형은 민간어린이집이 217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 어린이집이 128명(22.2%), 국공립 어린이집 76명(13.2%), 직장어린이집 72명(12.5%),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63명(10.9%),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20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은 만 2세가 154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만 1세 105명(19.1%), 만 1세 미만 73명(13.3%), 만 3세와 혼합연령이 모두 66명(12%), 만 5세 50명(9.1%), 만 4세 36명(6.5%)의 순이었다.

<표 III-1>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N=57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1(0.2)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108(18.8)	
	여	575(99.8)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97(16.8)	
연령	21~25	114(19.8)	최초 취득 자격증	전문대학	255(44.3)	
	26~30	112(19.4)		4년제 대학교	109(18.9)	
	31~35	68(11.8)		대학원 이상 기타	7(1.2)	
	36~40	95(16.5)		보육교사3급	73(12.7)	
	41~50	135(23.4)		보육교사2급	468(81.3)	
50세 이상	52(9.0)	특수교사	2(0.3)			
기관 소재 지역	서울 및 경기	284(49.3)	현재 소지한 보육교사 자격종류	원장	33(5.7)	
	경남 및 경북	127(22.0)		보육교사 3급	43(7.5)	
	전남 및 전북	82(14.2)		보육교사 2급	169(29.5)	
	충남 및 충북 강원	68(11.8) 15(2.6)		보육교사 1급	186(32.5)	
최종학력	고등학교	69(12.0)	현재 소지한 유치원 교사 자격종류	원장	174(30.4)	
	전문대학	271(47.0)		유치원 교사2급	168(80.0)	
	4년제 대학교	194(33.7)		유치원 교사1급	31(14.8)	
	대학원 석사이상	42(7.3)		원감	1(0.5)	
최종전공	사회복지학	65(11.3)	직급	원장	11(5.2)	
	아동복지학	50(8.7)		보육교사	494(85.8)	
	아동학	44(7.6)		특수교사	3(0.5)	
	영유아보육학	59(10.2)		원장	79(13.7)	
	유아교육학	243(42.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76(13.2)
	기타 전공	115(2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63(10.9)
보육교사 경력	1년 미만	57(9.9)	법인·단체등어린이집		20(3.5)	
	1년~3년 미만	114(19.8)	직장어린이집		72(12.5)	
	3년 ~ 5년 미만	135(23.4)	가정 어린이집		128(22.2)	
	5년 ~ 7년 미만	97(16.8)	부모협동어린이집		0(0.0)	
	7년~9년 미만	72(12.5)	민간어린이집	217(37.7)		
	9년 이상	101(17.5)	담당 영유아 연령	만1세미만	73(13.3)	
원장 경력	1년 미만	7(7.7)		만1세	105(19.1)	
	1년~3년 미만	14(15.4)		만2세	154(28.0)	
	3년 ~ 5년 미만	23(25.3)		만3세	66(12.0)	
	5년 ~ 7년 미만	20(22.0)		만4세	36(6.5)	
	7년~9년 미만	13(14.3)		만5세	50(9.1)	
	9년 이상	14(15.4)	혼합연령	66(12.0)		

(2) 연구도구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경험,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 교육에 대한 요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의 구성은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III-1] 설문 문항의 구성

[그림 III-1]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은 연구 대상 보육교직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으로 범주화하였다. 한편 설문지와 함께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한 연구 동의서를 함께 구성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김진숙(2009)이 개발한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실행수준’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크게 하루 일과 준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루 일과 준중은 등원, 정리, 화장실 다녀오기, 소집단 활동, 자유선택활동, 점심, 낮잠, 특별활동의 8개

하위 영역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 최선의 이익은 자율성 존중, 의사 존중, 개별성 존중, 정보 제공의 4개 하위 영역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항상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46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하위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구성	하위 영역	문항번호	문항 수	Cronbach's α
하루 일과 존중	등원	1, 2	2	.907
	정리	3	1	
	화장실 다녀오기	4, 5	2	
	소집단 활동	6, 7, 8	3	
	자유선택활동	9, 10, 11, 12	4	
	점심	13, 14, 15	3	
	낮잠	16, 17	2	
	특별활동	18, 19	2	
아동최 선의 이익	자율성 존중	20, 21, 22, 23	4	.914
	의사 존중	24, 25, 26, 27, 28, 29	6	
	개별성 존중	30, 31, 32, 33, 34, 35, 36	7	
	정보제공	37, 38, 39, 40	4	
전체		1~40	40	.946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코딩 과정을 거친 다음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특성과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 영유아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이 경험한 인권교

육 유무에 따른 인권 감수성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가)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

(가)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보육교직원은 289명(50.2%)이고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은 287명(49.8%)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경험	있다	289(50.2)
	없다	287(49.8)

(나)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실태

①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직원 289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4>와 같다. 보육교직원 중 141명(48.8%)은 보육교과목 시간에 인권교육을 받았으며, 93명(32.2%)은 연수 및 특강, 55명(19.0%)은 교양 교과목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N=289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보육 교과목	141(48.8)
	교양 교과목	55(19.0)
	연수 및 특강	93(32.2)

대학교 다닐 때 저는 굿네이버스 찾아가서 받은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하는 아동 인권교육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받았던 게 있고... (양성 과정 중) 사회교육시간에... 인권에 대해 다룬 적 있어요. (Q교사)

아동 발달이라든지 그런 수업시간에 접했던 거 같아요. 제가 거의 처음 들었던 수업에서 이런 거를 기초적인 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게 항상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발달에 대해서는... 뭐 옛날에... 지금 변화되었던 부분들... 거의 초반에 들었거든요. 그게 저는 참 좋았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밑바탕으로 깔아야 한다. 이런 말들...(I교사)

②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

보육교직원이 직전 교육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의 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289명 중 5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138명(47.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 학기 동안 81명(28.0%), 6~10시간 56명(19.4%)이 뒤를 이었다. 11~15시간과 16~20시간 교육받은 경우는 각각 7명(2.4%)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시간

N=289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을 받은 시간	5시간 미만	138(47.8)
	6~10 시간	56(19.4)
	11~15 시간	7(2.4)
	16~20 시간	7(2.4)
	한 학기 동안	81(28.0)

③ 인권교육의 내용

보육교직원들이 직전 교육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II-6>과 같다. 직전 교육에서 받은 인권교육의 내용은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74명(94.8%),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69명(93.1%),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268명(92.7%) 순이었다. 다음으로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267명(92.4%),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266명(92.0%),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64명(91.3%),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261명(90.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256명(88.6%),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54명(87.9%),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245명(87.9%)이 그 뒤를 이었다.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와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은 각각 233명(80.6%)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관한 법·제도는 215명(74.4%), 인권 감수성은 172명(59.5%)이었다.

<표 III-6>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내용

N=289(중복응답)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267(92.4)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261(90.3)
	인권에 관한 법·제도	215(74.4)
	인권 감수성	172(59.5)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245(84.8)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64(91.3)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74(94.8)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69(93.1)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254(87.9)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268(92.7)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256(88.6)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233(80.6)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233(80.6)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266(92.0)

영유아 보육과정 같은 거(과목)에서 보육을 하다 보면 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인권에 대해서 존중... 평등하게 인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어른하고 똑같이... 뭐 영유아의 이해 같은 과목에서도 (배웠어요) (E교사)

④ 인권교육의 교수법

직전 교육에서 보육교직원들이 경험한 인권교육에서 사용된 교수법은 <표 III-7>과 같다. 강의형이 248명(85.8%)으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으며 혼합형 29명

(10.0%), 토론형 10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표형과 반성적 저널 작성은 각각 1명(0.3%)이었으며, 활동형은 0명(0.0%)이었다.

<표 III-7>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교수법

N=289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교수법	강의형	248(85.8)
	토론형	10(3.5)
	발표형	1(0.3)
	활동형	0(0.0)
	혼합형	29(10.0)
	반성적 저널 작성	1(0.3)

(다)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만족도

① 인권교육의 만족도

직전 교육에서 경험한 인권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만족도가 보통이라는 응답은 163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100명(34.6%)이었다.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음과 매우 만족함이 각각 12명(4.2%), 매우 만족하지 않음이 2명(0.7%)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

N=289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음	2(0.7)
	만족하지 않음	12(4.2)
	보통	163(56.4)
	만족함	100(34.6)
	매우 만족함	12(4.2)

②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

직전 교육에서 보육교직원이 받은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은 <표 III-9>와 같다.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으로 미치는 요인으로 현장 적용 가

능성을 답한 경우가 113명(39.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적절성 104명(36.0%), 교수 방법 38명(13.1%), 강사의 전문성 30명(10.4%), 교재의 활용 가능성 4명(1.4%)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9>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

N=289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만족도의 교육 요인	교육내용의 적절성	104(36.0)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	113(39.1)
	강사의 전문성	30(10.4)
	교수 방법	38(13.1)
	교재의 활용 가능성	4(1.4)

나)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

(가)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

보육교직원의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보육교직원은 382명(66.3%)이었고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은 194명(33.7%)이었다.

<표 III-10> 재직 중 인권교육에 대한 경험 유무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경험	있다	382(66.3)
	없다	194(33.7)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194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와 인권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조사하였다.

①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보육교직원이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표 III-11>과 같이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았음이 118명(6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음 39명(20.1%),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자가 아님 28명

(14.4%),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9명(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N=194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118(60.8)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자가 아니어서	28(14.4)
	인권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39(20.1)
	인권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9(4.6)

② 인권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요인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에게 인권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요인을 중복응답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III-12>와 같다. 응답자 중 교육 시간대를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요인이라고 답한 경우가 109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68명(35.1%),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가 67명(34.5%), 과중한 업무와 교육기간이 각각 51명(26.3%), 비용 부담 21명(10.8%), 원장의 관심 부족 15명(7.7%) 순이었다.

<표 III-12>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참여가 어려웠던 요인

N=194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요인	교육 시간대	109(56.2)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67(34.5)
	교육 기간	51(26.3)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68(35.1)
	비용부담	21(10.8)
	원장의 관심 부족	15(7.7)
	과중한 업무	51(26.3)

(나)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실태

①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재직 중 인권교육을 경험한 382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3>과 같다. 382명의 보육교직원 중 가장 많은 159명(41.6%)은 직무교육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별 특강 및 연수 84명(22.0%), 승급교육 81명(21.2%), 어린이집 자체 교육 44명(11.5%), 특별직무교육 11명(2.9%), 법인 및 재단 교육 3명(0.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	직무교육	159(41.6)
	승급교육	81(21.2)
	특별직무교육	11(2.9)
	법인 및 재단 교육	3(0.8)
	지역별 특강 및 연수	84(22.0)
	어린이집 자체교육	44(11.5)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교육시간 (전체 교육시간 4시간)에 아주 일부분 이긴 하였지만 아동 인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P교사)

1급 승급교육 이번에 여름에 받았었는데 거기서 인권 파트로 하루 종일 8시간을 두 번 정도 받았어요. (Q교사)

② 인권교육 시행 기관

보육교직원이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을 시행한 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14>와 같다. 382명의 보육교직원 중 118명(30.9%)이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111명(29.1%), 인권 및 아동 관련 비영리단체 45명(11.8%), 대학(연구소) 43명(11.3%), 보육시설

연합회 29명(7.6%) 순이었다. 인권교육 시행 기관이 정부 및 지자체와 보육 관련 법인 및 재단인 경우는 각각 18명(4.7%)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실시 기관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실시 기관	대학 (연구소)	43(11.3)
	보육교사교육원	118(30.9)
	육아종합지원센터	111(29.1)
	보육시설연합회	29(7.6)
	정부 및 지자체	18(4.7)
	인권 및 아동 관련 비영리단체	45(11.8)
	보육 관련 법인 및 재단	18(4.7)

예전엔 보육정보센터였거든요. 그전에 보육정보센터일 때 아동 인권에 관한 동영상 자료로 인터넷 강의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일이라... 생각보다 짧아서 아동의 권리 네 가지 권리로 시작하는 거... 다 합치면 제가 한 4번 정도를 들은 것 같은데 4회를 들었는데 30분 정도씩 2시간 정도 (G원장)

③ 인권교육의 내용

재직 중 보육교직원들이 경험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중복응답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Ⅲ-15>와 같다.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346명(90.6%),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43명(90.3%),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342명(90.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341명(89.7%),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39명(89.2%),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38명(88.9%),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337명(88.5%) 순이었다.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29명(86.4%),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314명(82.6%),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308명(81.1%),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297명(78.0%)이 그 뒤를 이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인권에 관한 법·제도는 각각 296명(77.9%), 291명(76.6%), 인권 감수성은 249명(65.5%)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내용

N=382(중복응답)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내용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346(90.6)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342(90.0)
	인권에 관한 법·제도	291(76.6)
	인권 감수성	249(65.5)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296(77.9)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38(88.9)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43(90.3)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39(89.2)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329(86.4)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341(89.7)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314(82.6)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308(81.1)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297(78.0)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337(88.5)

첫 번째 시간에서는, 아동 인권보다 포괄적 인권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에는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명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배웠어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A교사)

아동을 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금한다는 교육을 받았어요. 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의 아동의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영유아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깨닫게 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책임의식을 가질 때 보육교사로서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J교사)

④ 인권교육의 형태

보육교직원들이 경험한 인권교육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16>과 같이 집합교육이 319명(83.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 교육 25명(6.5%),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22명(5.8%), 전달연수 16명(4.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형태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형태	집합교육	319(83.5)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22(5.8)
	전달연수	16(4.2)
	온라인 교육	25(6.5)

집합교육은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그 내용이 너무나 실생활이랑 잘 접목되어서 알차지 않은 이상 되게 형식적인 생각이 들어서 특히 집합교육이라 하면 몇 천 명... 그렇다 보니 당연히 집중이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집합교육은...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원에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에 제가 보수교육을 받았어요. 이번에 ○○에서 사이버 강의로 들었는데...(I교사)

⑤ 인권교육과 연계된 교육 주제

보육교직원들이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과 연계된 교육 주제를 살펴보면 <표 III-17>과 같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이 219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과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이 각각 59명(15.4%), 아동권리교육 20명(5.2%), 차별(장애/성차별) 예방교육 13명(3.4%),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6명(1.6%), 교통안전 4명(1.0%)이 뒤를 이었다.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장애통합 및 다문화 교육 각각 1명(0.3%)이었고 재난대비 안전 0명(0.0%)이었다.

<표 III-17>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과 연계된 교육 주제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이 연계된 교육 주제	차별(장애/성차별) 예방교육	13(3.4)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19(57.3)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6(1.6)
	약물의 오남용 예방	1(0.3)
	재난대비 안전	0(0.0)
	교통안전	4(1.0)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59(15.4)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	59(15.4)
	장애통합 및 다문화 교육	1(0.3)
	아동권리교육	20(5.2)

보수교육에서는... (승급교육의 경우에 영유아 인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초반에 잠깐 하고 스쳐 지나갔던 거 같아요. 그거보다 기억에 남는 게 평가인증... 그런 문항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 들은 게 있어서 뇌리에 있거든요. (I교사)

저희가 꾸준히 매년 받는 교육은 따로 있고요. 저희가 일 년마다 이제 매 해 받는 안전교육이 있어요. 그 뒤에 성범죄나 안전교육이 다 포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합쳐서 합동적으로 하거든요. (E교사)

⑥ 인권교육의 교수법

보육교직원이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교수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18>과 같다. 인권교육에서 사용된 교수법은 강의형이 335명(87.7%)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 29명(7.6%), 토론형 12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표형과 활동형은 각각 3명(0.8%)이었으며 반성적 저널 작성은 0명(0.0%)이었다.

<표 III-18>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교수법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교수법	강의형	335(87.7)
	토론형	12(3.1)
	발표형	3(0.8)
	활동형	3(0.8)
	혼합형	29(7.6)
	반성적 저널 작성	0(0.0)

공유하고 느끼고 서로 공유하는 거 느끼고 그게 또 몸에 뭔가 배여서 와서 실천이 되는 그게 교육이지... 교사들이 자기 얘기도 한 번 해보는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대집단으로 가면 발표 질의응답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면 또 싫어해요. 교육 시간 길어진다고(N원장)

(다)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만족도

① 인권교육의 만족도

보육교직원이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19>와 같다. 보육교직원 중 194명(50.8%)은 수강한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했다. 155명(40.6%)은 만족함, 19명(5.0%)은 매우 만족함, 11명(2.9%)은 만족하지 않음, 3명(0.8%)은 매우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9>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

N=382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만족도	매우 만족하지 않음	3(0.8)
	만족하지 않음	11(2.9)
	보통	194(50.8)
	만족함	155(40.6)
	매우 만족함	19(5.0)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에요. 저희가 하게 되면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니까 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클릭을 무조건 누를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시스템 자체는. 그냥 그렇게 누르고 저희가 그것을 상세하게 듣거나 그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시험을 치다 보면 그 문제를 보고 이해를 하기 보다는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서 그냥 저희가 이거구나 하고 체크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E교사)

②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요인

보육교직원이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요인을 중복응답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III-20>과 같다. 보육교직원 중 223명(58.4%)이 교육 시간대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요인으로 답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106명(27.7%), 과중한 업무 93명(24.3%), 교육 기간 87명(22.8%),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64명(16.8%)의 순이었다. 비용 부담과 원장의 관심 부족은 각각 13명(3.4%)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운영 요인

N=382(중복응답)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만족도의 운영 요인	교육 시간대	223(58.4)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	106(27.7)
	교육 기간	87(22.8)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64(16.8)
	비용 부담	13(3.4)
	원장의 관심 부족	13(3.4)
	과중한 업무	93(24.3)

③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요인을 중복응답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III-21>과 같다.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219명(57.3%)으로 인권교육 교육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적절성 169명(44.2%), 강사의 전문성 105명(27.5%), 교수 방법 59명(15.4%), 교재의 활용 가능성 18명(4.7%)이었다.

<표 III-21>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

N=382(중복응답)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만족도의 교육 요인	교육내용의 적절성	169(44.2)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	219(57.3)
	강사의 전문성	105(27.5)
	교수 방법	59(15.4)
	교재의 활용 가능성	18(4.7)

아동의 인권이라든지 보육교사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적절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고... (I교사)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면서 현장에서 있을법한 조심해야 할 것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법 한 걸 예시를 많이 들어주니까 적용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A교사).

선임교사교육을 위한 인권강사 양성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점이라면 아동보육시설에 관한 교육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줄을 설 때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사례를 넣으면서 하는 것으로, 줄을 설 때는 너무 긴 줄에 아이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발달과정 중에 있는데 너무 길게 서 있는 게 계속 혼나기만 하는 것이 인권적인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해요. 사례를 하나씩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대규모로 진행하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위주였다면, 이번에 교육들은 그런 교육이 아닌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교육이었거든요. (K인권교육전문가)

다)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①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보통이라는 응답이 227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 144명(25.1%), 그렇다 134명(23.3%), 전혀 그렇지 않다 54명(9.4%), 매우 그렇다 17명(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2>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

N=576

내용	구분	N(%)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54(9.4)
	그렇지 않다	144(25.1)
	보통이다	227(39.4)
	그렇다	134(23.3)
	매우 그렇다	17(3.0)

② 영유아 인권 침해 형태에 대한 인식

보육교직원이 인식하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침해되는 형태에 대한 결과는 <표 III-23>과 같이 행동제한이 228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선택과 결정에서 제외 152명(26.4%), 의사소통 부재 117명(20.3%), 부당한 차별 대우 38명(6.6%), 신체적 체벌 20명(3.5%), 기회 소거 11명(1.9%), 공간 분리 10

명(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영유아 인권 침해 형태

N=576

내용	구분	N(%)
영유아 인권 침해 형태	의사소통 부재	117(20.3)
	선택과 결정에서 제외	152(26.4)
	부당한 차별 대우	38(6.6)
	행동제한	228(39.6)
	신체적 체벌	20(3.5)
	공간 분리	10(1.7)
	기회 소거	11(1.9)

체육이나 음악활동을 할 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고 막돌아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하자고 해도 애는 아직 언어 수준이 안 돼서 자동차를 타고 막 가요... 그때 정말 많이 웃었어요. 놀고 싶구나 그러면 저도 밖에 나가서 놀자 조금 있다가 놀자 하면서... 인권은 지켜줘야 하는데 하면서(도) 지금 음악활동시간이니깐 그렇게 있어요. (A교사)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간의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교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서 이동하게 하는 거... 그게 교사로서는 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이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나는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소를 이동한 거니깐 아이 입장에서는 인권이 피해 받지 않거나 생각이 들어요.(M교사)

③ 영유아 인권 침해 시간에 대한 인식

영유아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4>와 같다. 대소집단 활동에서 인권이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응답이 227명(39.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유선택놀이 144명(25.0%), 기본생활 습관 94명(16.3%), 점심 및 간식 69명(12.0%), 실외 자유놀이 27명(4.7%), 등원 및 귀가 지도 15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영유아 인권 침해 시간

N=576

내용	구분	N(%)
영유아 인권 침해 시간	등원 및 귀가 지도	15(2.6)
	대소집단 활동	227(39.4)
	자유선택놀이	144(25.0)
	점심 및 간식	69(12.0)
	기본생활습관	94(16.3)
	실외 자유놀이	27(4.7)

애들이 자유 놀이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지정해 주기보다는 애들이 그에 맞게 자율적으로 놀아야 되는 놀이 시간인데. 어쨌든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평가인증을 해보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논다고 놀지만 어느 정도 틀에 얽매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E교사)

대소집단활동. 이게 가장 크겠죠... 같이 동화를 듣거나 이럴 때... 같이 동화 듣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에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 하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걸. 그래서 자기는 돌아다니고 싶은 거죠... 강압적으로 하루 일과에 맞추다 보니까 선생님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G원장)

식사 시간도 좀 더 자율적인 시간을 줘서 정해진 일과 아니어도 '오전 간식 같은 경우에 몇 시까지는 너희가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상적인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원장님이 교육철학이라든지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바라는 방향이 있으니깐 식습관 지도도 그렇고, 숟가락, 젓가락 잡는 법 이런 것도 그 연령이면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식사, 수면, 놀이도 그렇고... 요즘 제 딜레마는 놀이를 즐기실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3세, 4세, 5세 혼합반이다 보니 걸리는 부분이죠. (B교사)

(나) 영유아 인권 실현 요인에 대한 인식

영유아 인권이 실현되기 위한 요인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III-25>와 같다. 보육교직원들은 보육교사(256명, 44.4%)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인식하였고, 보육환경(189명, 32.8%), 보육과정(67명, 11.6%), 관련 법 및 제도적 기반(62명, 10.8%), 부모(2명, 0.3%)의 순으로 인식하였다.

<표 III-25>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 실현 요인

N=576

내용	구분	N(%)
영유아 인권 실현 요인	보육과정	67(11.6)
	보육교사	256(44.4)
	관련 법 및 제도적 기반	62(10.8)
	보육환경	189(32.8)
	부모	2(0.3)

라) 인권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요구

(가) 인권교육 실행에 대한 요구

①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 중 331명(57.5%)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26>과 같이 매우 필요함 148명(25.7%), 보통 92명(16.0%), 필요하지 않음 5명(0.9%), 전혀 필요하지 않음 0명(0.0%)이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6> 보육교직원이 인식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필요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필요하지 않다	5(0.9)
	보통이다	92(16.0)
	필요하다	331(57.5)
	매우 필요하다	148(25.7)

② 인권교육 실행 과정에 대한 요구

인권교육의 실행 과정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7.3%인 215명이 직무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표 III-27>에 서처럼 특별연수 및 특강 173명(30.0%), 승급교육 75명(13.0%), 직전 교육 50명(8.7%), 특별직무교육 36명(6.3%), 기관별 자체 교육 27명(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인권교육 실행 과정에 대한 요구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실행 과정	직전 교육	50(8.7)
	직무교육	215(37.3)
	승급교육	75(13.0)
	특별직무교육	36(6.3)
	기관 별 자체교육	27(4.7)
	특별연수 및 특강	173(30.0)

승급교육, 보수교육이 있잖아요. 교육 시간 안에서 (인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교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사들도 ‘맞아 (아이의 인권을) 존중 받아야 돼!’ 라고,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필요한 것 같아요. (B 교사)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원장님도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사들 간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해주시고 뜬금없이 다른 교사들이 그 방법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거 같아요. (E교사)

③ 인권교육 실행 형태에 대한 요구

인권교육 실행 형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28>과 같다. 과반수가 넘는 보육교직원은 집합교육(298명, 51.7%) 형태로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192명(33.3%), 온라인 교육 66명(11.5%), 전달연수 20명(3.5%)이 뒤를 이었다.

<표 III-28> 인권교육 실행 형태에 대한 요구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실행 형태	집합교육	298(51.7)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192(33.3)
	전달연수	20(3.5)
	온라인교육	66(11.5)

④ 인권교육 실행 시간에 대한 요구

인권교육의 실행 시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3시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20명(72.9%), 6시간 이내 110명(19.1%), 9시간 이상 27명(4.7%), 9시간 이내 19명(3.3%)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인권교육 실행 시간에 대한 요구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 실행 시간	3시간 이내	420(72.9)
	6시간 이내	110(19.1)
	9시간 이내	19(3.3)
	9시간 이상	27(4.7)

⑤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0>에서 볼 수 있듯이 강의형 287명(49.8%), 토론형 131명(22.7%), 혼합형 117명(20.3%), 활동형 25명(4.3%), 반성적 저널 작성 10명(1.7%), 발표형 6명(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

N=576

내용	구분	N(%)
인권교육의 교수법	강의형	287(49.8)
	토론형	131(22.7)
	발표형	6(1.0)
	활동형	25(4.3)
	혼합형	117(20.3)
	반성적 저널 작성	10(1.7)

⑥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에 포함될 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1>과 같다.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요구가 511명(88.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510명(88.5%),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508명(88.1%),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506명(87.8%),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493명(85.6%),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492명(85.4%),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일과 476명(82.6%)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31>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

N=576

내용	구분	N(%)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0.5)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7(1.2)
	보통이다	125(21.7)
	포함해야 한다	298(51.7)
	매우 포함해야 한다	143(24.8)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0.5)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7(1.2)
	보통이다	130(22.6)
	포함해야 한다	310(53.8)
	매우 포함해야 한다	126(21.9)
인권에 관한 법·제도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5(0.9)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4(2.4)
	보통이다	177(30.7)
	포함해야 한다	273(47.4)
	매우 포함해야 한다	107(18.6)
인권 감수성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0.2)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4(2.4)
	보통이다	155(26.9)
	포함해야 한다	287(49.8)
	매우 포함해야 한다	119(20.7)

내용	구분	N(%)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보장, 참여 및 의견 존중)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0.3)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4(2.4)
	보통이다	171(29.7)
	포함해야 한다	271(47.0)
	매우 포함해야 한다	118(20.5)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0.2)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5(0.9)
	보통이다	77(13.4)
	포함해야 한다	298(51.7)
	매우 포함해야 한다	195(33.9)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0.2)
	보통이다	65(11.3)
	포함해야 한다	297(51.6)
	매우 포함해야 한다	213(37.0)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0.3)
	보통이다	68(11.8)
	포함해야 한다	295(51.2)
	매우 포함해야 한다	211(36.6)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0.3)
	보통이다	82(14.2)
	포함해야 한다	302(52.4)
	매우 포함해야 한다	190(33.0)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0.2)
	보통이다	64(11.1)
	포함해야 한다	267(46.4)
	매우 포함해야 한다	244(42.4)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3(0.5)
	보통이다	65(11.3)
	포함해야 한다	290(50.3)
	매우 포함해야 한다	218(37.8)

내용	구분	N(%)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0.3)
	보통이다	98(17.0)
	포함해야 한다	279(48.4)
	매우 포함해야 한다	197(34.2)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0(0.0)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8(1.4)
	보통이다	124(21.5)
	포함해야 한다	288(50.0)
	매우 포함해야 한다	156(27.1)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성폭력, 안전, 학대, 유괴, 납치, 실종 등)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0.2)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11(1.9)
	보통이다	105(18.2)
	포함해야 한다	286(49.7)
	매우 포함해야 한다	173(30.0)

보육교사가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발달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계속 관찰하고 하는 게... 아동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있다면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M교사)

마)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정도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하위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III-32>와 같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의 경우 평균 4.09, 표준편차 .42로 나타났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두 하위 요인인 하루 일과 존중은 평균 4.16, 표준편차 .44이었고, 아동 최선의 이익은 평균 4.02, 표준편차 .47이었다. 하루 일과 존중의 하위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요인은 화장실 다녀오기(M=4.38, SD=.61)였고 등원(M=4.36, SD=.51), 자유선택활동(M=4.20, SD=.51), 정리(M=4.19, SD=.71), 소집단활동(M=4.13, SD=.57), 낮

잠 (M=4.07, SD=.69), 점심(M=4.07, SD=.64), 마지막으로 특별활동(M=3.91, SD=.70)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 최선의 이익의 하위 요인에서 의사 존중(M=4.14, SD=.49)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개별성 존중(M=4.01, SD=.57), 자율성 존중(M=3.95, SD=.57), 정보제공(M=3.93, SD=.62)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N=576

구성	하위 영역	M	SD
하루 일과 존중	등원	4.36	.51
	정리	4.19	.71
	화장실 다녀오기	4.38	.61
	소집단 활동	4.13	.57
	자유선택활동	4.20	.51
	점심	4.07	.64
	낮잠	4.07	.69
	특별활동	3.91	.70
	총점	4.16	.44
	아동 최선의 이익	자율성 존중	3.95
의사 존중		4.14	.49
개별성 존중		4.01	.57
정보제공		3.93	.62
총점		4.02	.47
전체		4.09	.42

(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III-33>과 <표 III-34>와 같다.

①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표 III-33>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의 경우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13, SD=.42)과 경험이 없는 집단(M=4.05, SD=.42)의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53, p>.05). 하루 일과 존중 총점에서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20, SD=.44)과 경험이 없는 집

단($M=4.11$, $SD=.44$)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29$, $p<.05$). 하루 일과 존중 하위 영역 중 등원, 점심, 낮잠, 특별활동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등원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41$, $SD=.52$)과 경험이 없는 집단($M=4.30$, $SD=.49$)의 차이는 $t=2.482$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점심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12$, $SD=.61$)과 경험이 없는 집단($M=4.01$, $SD=.66$)의 차이는 $t=2.105$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낮잠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13$, $SD=.67$)과 경험이 없는 집단($M=4.01$, $SD=.70$)의 차이는 $t=2.137$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특별활동의 경우에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3.96$, $SD=.67$)과 경험이 없는 집단($M=3.85$, $SD=.72$)의 차이는 $t=1.979$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하위 영역인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의 경우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06$, $SD=.56$)과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M=3.98$, $SD=.47$)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827$, $p<.05$). 아동 최선의 이익 하위 영역 중 자율성 존중만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01$, $SD=.58$)과 경험이 없는 집단($M=3.89$, $SD=.56$)의 차이가 $t=2.488$ 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3>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N=576

구성	하위 영역		M(SD)	t
하루 일과 존중	등원	있음	4.41(.52)	2.482*
		없음	4.30(.49)	
	정리	있음	4.23(.71)	1.488
		없음	4.14(.71)	
	화장실 다녀오기	있음	4.43(.59)	1.890
		없음	4.34(.62)	
	소집단 활동	있음	4.15(.58)	1.131
		없음	4.10(.57)	
	자유선택활동	있음	4.23(.51)	1.359
		없음	4.17(.51)	
	점심	있음	4.12(.61)	2.105*
		없음	4.01(.66)	
	낮잠	있음	4.13(.67)	2.137*
		없음	4.01(.70)	
특별활동	있음	3.96(.67)	1.979*	
	없음	3.85(.72)		
총점	있음	4.20(.44)	2.429*	
	없음	4.11(.44)		
아동 최선의 이익	자율성 존중	있음	4.01(.58)	2.488*
		없음	3.89(.56)	
	의사 존중	있음	4.16(.48)	1.129
		없음	4.11(.50)	
	개별성 존중	있음	4.04(.55)	1.138
		없음	3.98(.59)	
	정보제공	있음	3.98(.61)	1.783
		없음	3.89(.62)	
	총점	있음	4.06(.46)	1.827
		없음	3.98(.47)	
전체	있음	4.13(.42)	2.253*	
	없음	4.05(.42)		

*p<.05

②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표 III-34>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에서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10, SD=.42)과 경험이 없는 집단(M=4.05, SD=.4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395, p>.05). 하루 일과 존중의 총점에서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M=4.17, SD=.43)과 경험이 없는 집단(M=4.14, SD=.46)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749, p<.05$).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에서도 역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 ($M=4.05, SD=.46$)과 경험이 없는 집단($M=3.97, SD=.48$)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776, p<.05$).

<표 Ⅲ-34> 재직 중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차이

N=576

구성	하위 영역		M(SD)	t
하루 일과 존중	등원	있음	4.36(.50)	.527
		없음	4.34(.52)	
	정리	있음	4.23(.70)	1.688
		없음	4.12(.73)	
	화장실 다녀오기	있음	4.41(.58)	1.529
		없음	4.33(.65)	
	소집단 활동	있음	4.12(.57)	-.213
		없음	4.13(.58)	
	자유선택활동	있음	4.20(.51)	.156
		없음	4.20(.51)	
	점심	있음	4.06(.64)	-.329
		없음	4.08(.64)	
	낮잠	있음	4.11(.67)	1.723
		없음	4.00(.72)	
특별활동	있음	3.92(.67)	.733	
	없음	3.88(.75)		
총점	있음	4.17(.43)	.749	
	없음	4.14(.46)		
아동 최선의 이익	자율성 존중	있음	3.99(.58)	1.874
		없음	3.89(.56)	
	의사 존중	있음	4.15(.48)	.843
		없음	4.11(.51)	
	개별성 존중	있음	4.04(.55)	1.873
		없음	3.95(.60)	
	정보제공	있음	3.96(.60)	1.303
		없음	3.88(.64)	
	총점	있음	4.05(.46)	1.776
		없음	3.97(.48)	
전체	있음	4.10(.42)	1.395	
	없음	4.05(.44)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 576명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경험,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준중 보육 실행 수준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50.2%가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을 경험하였으며 이들 중 48.8%는 보육 교과목을 통해, 32.2%는 연수 및 특강을 통해, 그리고 19.0%는 교양 교과목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하였다. 또한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시간은 5시간 미만이 47.8%, 한 학기 동안이 28.0%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 감수성의 순이었다. 한편 직전 교육 중 보육교직원이 경험한 인권교육은 85.8%가 강의형 교수법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6.4%, 만족함이 34.6%로 나타났다. 직전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요인으로는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39.1%, 교육내용의 적절성이 36.0%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의 33.7%가 재직 중 인권교육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들 중 60.8%는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20.1%는 인권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교육 시간대(56.2%),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35.1%), 교육장소까지의 거리(34.5%), 과중한 업무(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 인권교육을 경험한 보육교직원 중 41.6%는 직무교육에서, 22.0%는 지역별 특강 및 연수에서, 21.2%는 승급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인권교육을 시행한 기관은 보육교사 교육원(30.9%)이 가장 많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29.1%), 인권 및 아동 관련 비영리단체(11.8%) 순이었다. 재직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 감수성의 순이었다.

재직 중 보육교직원이 경험한 인권교육의 83.5%는 집합교육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57.3%),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15.4%), 영유아의 인권 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15.4%) 등의 주제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보육교직원 중 87.7%가 강의형 인권교육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50.8%, 만족함이 40.6%로 나타났다. 현직 교육 중 경험한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운영 요인은 교육 시간대(58.4%), 교육 장소까지의 거리(27.7%), 과중한 업무(24.3%), 교육 기간(22.8%),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16.8%) 순이었다.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으로 가장 많은 보육교직원은 교육내용의 현장 적용 가능성(57.3%)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교육내용의 적절성(44.2%), 강사의 전문성(27.5%), 교수 방법(15.4%), 교재의 활용 가능성(4.7%)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인권실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39.4%는 보통, 25.1%는 그렇지 않다, 23.3%는 그렇다르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인권의 침해 형태로 행동제한이라고 답한 경우가 3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선택과 결정에서 제외(26.4%), 의사소통의 부재(20.3%)가 뒤를 이었다. 영유아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으로는 대·소집단 활동(39.4%), 자유선택놀이(25.0%), 기본생활습관(16.3%), 점심 및 간식(12.0%)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요인으로는 보육교사(44.4%)와 보육환경(32.8%)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57.5%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5.7%는 인권교육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의 37.3%는 직무교육에서, 30.0%는 특별연수 및 특강에서, 그리고 13.0%는 승급교육 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행되기를 요구하였고 집합교육(51.7%),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33.3%)의 형태의 인권교육이 실행되기를 바랐다. 보육교직원의 72.9%가 3시간 이내의 인권교육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교수법에 대해서는 강의형(49.8%), 토론형(22.7%), 혼합형(20.3%)의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

해서는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관련 이슈,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 감수성에 대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의 평균은 4.09로 나타났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하위 요인인 하루 일과 존중은 평균 4.16이었고 아동 최선의 이익은 평균 4.02로 나타났다. 하루 일과 존중의 하위 요인 중 화장실 다녀오기(M=4.38)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의 하위 요인에서는 의사 존중(M=4.14)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t=2.253, p>.05$)과 하루 일과 존중 총점($t=2.429, p<.05$)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827, p<.05$). 현직 교육에서의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의 차이는 나타났지 않았다.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 수준 총점($t=1.395, p>.05$)과 하루 일과 존중 총점($t=.749, p<.05$)과 아동 최선의 이익 총점($t=1.776, p<.05$) 모두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과 경험이 없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면담

(1) 연구 참여자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교사 13명과 원장 2명, 인권교육 전문가 2명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 근무하거나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인을 통해 추천받았다. 추천받은 보육교직원에게 우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목

적과 자료수집 절차를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17명의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와 원장의 경우 1년부터 22년까지 다양한 보육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면담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

면담자	경력	지역	직업	자격증
A교사	2년 9월	대구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B교사	7년	서울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C인권교육전문가	6년	대구	인권교육전문가	
D교사	11년	경남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E교사	6년	대구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F교사	1년	경기	보육교사	보육교사3급
G원장	7년 6개월	경북	원장	
H교사	8년	서울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I교사	5년 6개월	대구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J교사	16년 6개월	경남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K인권교육전문가	1년	서울	인권교육전문가	보육교사2급
L인권교육전문가	15년	대구	원장 인권교육전문가	
M교사	7년	서울	보육교사	보육교사 1급
N원장	4년 11개월	경북	원장	
O교사	3년	경남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P교사	22년	경남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Q교사	3년7개월	서울	보육교사	보육교사1급

(2) 자료수집

보육교직원들과 인권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인권에 대한 보육교직원들의 인식, 직전·재직 중 인권교육의 경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 인권 친화적 보육을 실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이해하기 위해 총 20회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여자별로 참여자의 일정과 진행된 면담의 내용을 고려하여 1회 면담 또는

2회 면담을 하였다. 유선을 통해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했지만 면담 참여자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연구목적과 절차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면담을 시작하였다. 모든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50~6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하지만 교사별로 90분 이상 면담이 진행된 예도 있었다. 연구자는 교사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면담 내용을 음성 녹음장치에 저장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면 추가로 전화를 활용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의 면담은 개별 관련 문헌과 연구목적에 반영하여 작성된 개방형 질문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Hatch, 2008).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으로 면담이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평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유아의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들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3) 자료 분석

질적 자료의 분석은 단순히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담겨있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묘사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면담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개별 면담에서 수집된 녹음자료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함께 전사하였다. 완성된 전사본을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 방식은 질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법으로 해석적 주제 분석으로 불리는데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유형(주제)을 구체화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방식”(Braun & Clarke, 2006, p. 79)이다. 이 분석 방식에 따라 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면담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에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였다. 먼저 각 연구 참여자별로 작성된 전사 기록을 읽고 영유아 인권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인식, 기존 교사 인권교육의 경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갈등과 연관된 단어나 문장, 즉 코드를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코드를 포함한 자료를 전사본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문서에 옮긴 다음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자료 읽기를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유사한 혹은 관계있는 코드들을 범주화하고 잠정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주제가 하위 범주나 코드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다시 검토한 다음 주제를 확정 지었다.

(4) 연구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영유아 인권에 다가서기, 인권교육의 경험 탐색하기,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제별 하위 범주는 <표 III-3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III-36> 면담의 분석 범주

범주	질문 내용
영유아 인권에 다가서기	영유아 인권은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것’
	보호받는 존재에서 인권 주체로
인권교육의 경험 탐색하기	기존 인권교육의 경험
	다른 교육 속 작은 주제 집합 인권교육
	문제 중심의 토론형 교사 인권교육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새로운 인권교육의 필요
	둔감성에서 인권 감수성 계발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행복하기
인권친화적 보육실천	인권친화적 보육이란
	영유아의 마음 읽어주기
	영유아의 참여권 존중하기
인권옹호자로서 딜레마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하기
	교사의 책임과 영유아 인권 사이의 혼란
인권옹호자로서 딜레마	인권옹호자로서 딜레마
	영유아 인권과 학부모의 요구, 교사의 불안 사이의 딜레마

가) 영유아 인권에 다가가기

(가) 영유아 인권은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것’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 인권을 영유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로 설명하였다. 처음 영유아 인권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 질문을 재확인하거나 대답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영유아 존중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직전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보육 관련 교과목에서 영유아에 대한 존중을 반복적으로 교육받은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교사는 예비교사로서 받았던 인권교육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영유아 보육과정 같은 거(과목)에서 보육을 하다 보면 아동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인권에 대해서 존중... 평등하게 인간하고 같이 연결해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어른하고 똑같이... 뭐 영유아의 이해 같은 과목에서도 (배웠어요) (E교사)

일부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 인권을 영유아 학대와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영유아 학대에 집중된 사회적 관심 때문에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된 것으로 상황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였다. 덧붙여 영유아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신이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Q교사는 자신이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다고 답하였다. 보육현장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강의하는 L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다. 이런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학대하지 않는 것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영유아의 인권이 최대한의 수준으로 실현되는 어린이집을 조성하려면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인권 하면 요즘 아무래도 학대가 크니깐, 학대 사건 때문에 학대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권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F교사)

오히려 적극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고, 인권존중이 돼야 되는데, 존중이 아니라 학대를 예방하는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내가 학대하는 사람만 안 되면 돼. 이렇게 자꾸 뒷발로 물러서게 되고... 이렇게 돼서 스킨십은 전혀 거의 못하고 있고...(Q교사)

근데 직접적으로 인권교육을 하다 보면 아동권리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속 하지마라고만 하니깐, 그럼 도대체 교사가 ‘도대체 해야 되는 건 뭐냐.’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니깐(L원장/인권교육전문가)

(나) 보호받는 존재에서 인권의 주체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가르치면서 의식·무의식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들 결정이 영유아의 인권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실현하는 결정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황옥경, 2012). 보육교직원의 영유아에 대한 관점은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영유아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영유아가 스스로 인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영유아의 인권을 지켜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P교사)

일부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를 권리를 가진 존재이지만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언급하였다. 영유아는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성인에게 의존하여 권리를 실현하게 된다. 일례로 영유아는 출생 직후 상당 기간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요구를 성인 양육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다. 물론 연령이 증가하면서 영유아가 가진 취약성은 감소하지만, 영유아의 인권 실현에는 부모나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최적의 성장과 발달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을 거치면서 의무이행자의 의무와 책임에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하는 것, 자기 의사표현을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싶다고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충분히 놀이하는 것, 보호 받아야 되는 거요. (H교사)

참여자들 중에서 다양한 인권교육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영유아를 성인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에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부모나 영유아교사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에 대한 인식보다 낮다는 선행 문헌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영유아의 참여 및 의견존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일방적인 보호가 될 가능성

이 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성인의 다각적인 노력이 실질적인 영유아의 권리 실현이 되려면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스스로 자신에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영유아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영유아가 결정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내린 결정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인권교육의 경험 탐색하기

(가) 기존 인권교육의 경험 : 다른 교육 속 작은 주제 집합 인권교육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네..라고 답하기도 좀 애매한 것이 인권교육이라고 명확하게 받지는 않고 커다란 주제 중에 잠시 언급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중에 잠시 언급된 아동인권 관련 교육내용이라 전반적인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두리몽실하게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D교사)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인권교육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안전교육, 특수 교육과정 등 인권 관련 주제의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사례의 D교사는 현직 교육 중에 인권교육에 참여했지만 동시에 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육현장에서는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영유아의 인권 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D교사와 I교사는 자신들이 참여했던 여러 종류의 현직 교육 중에 영유아 인권이 “잠깐” 혹은 “두리몽실하게” 다루어졌다고 표현하였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동학대랑 아동 인권, 성폭력,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들 그런 거죠. 주로 아동학대에 관해서 강의해 주셔서 그런 부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G원장)

보수교육에서는... (영유아 인권에 관한 내용은) 거의 초반에 잠깐 하고 스쳐 지나갔던 거 같아요. 그거보다 기억에 남는 게 평가인증... 그런 문항적인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게 있어서 뇌리에 있거든요. (I교사)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로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이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보육교사에게 참여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 인권 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교육의 주제와 강사가 달랐지만 내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육이 영유아의 권리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실제 보육실에서 영유아를 보육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예전엔 보육정보센터였거든요. 그전에 보육정보센터일 때 아동 인권에 관한 동영상 자료로 인터넷 강의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의 일이라... 생각보다 짧아서 아동의 권리 네 가지 권리로 시작하는 거... 다 합치면 제가 한 4번 정도를 들은 것 같은데 4회를 들었는데 30분 정도씩 2시간 정도 (G원장)

일부 참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유아 교육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현직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가 교육 시간대이다. 8시간 가까이 영유아를 보육한 이후 급하게 업무를 마무리하고 교육에 참석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높은 만족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원장이 수강한 온라인 교육은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일정을 고려하여 편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교육에 비해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E교사는 교육 시스템에 접속한 상태로 다른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말하면서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나) 새로운 인권교육의 필요 1 : 참여를 보장하는 토론형 인권교육

면담에 참여한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의 토론형 인권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대부분은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일방적 강의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일부는 소규모 집합교육에 참여하였고 자신들이 참여한 교육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의 형식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소규모 교육은 기존 대규모 집합교육과는 차별화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소규모 인권교육은 영유아 인권과 관련하여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들은 실제 사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경험을 통해 인권에 더욱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동료 교사들과 나눈 의견을 자신의 교실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교사들은 보육 일상에 내재한 인권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에게 공감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인권친화적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을 동료와 함께 모색할 수 있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자의 반 타의 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모든 일과가 끝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깐 선생님들도 많이 지쳐 계시고,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 있죠. 선생님들은 일과 끝났으니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한 4분의 3 정도 선생님들은 열심히 들으세요. 교육이 정말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같이 모둠활동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C인권교육전문가)

보육교직원을 위한 현직 교육이 이들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함양하려면 이론 중심 내용보다 현장 중심 내용(김영은, 신정숙, 2012; 이명조, 2007; 이진희, 홍혜경, 2011)을 다루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자신들이 만난 보육교직원들이 보육 일과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인권교육을 원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보육 교사들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교사는 온라인으로 수강한 인권교육을 회상하며 영유아의 인권이 존중·침해되는 예시를 충분히 다루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저는 인권 교육할 때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아동권리에 대한 자유선택활동이나 실외 활동, 급간식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가지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과 중에 녹여 드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을 해요. 일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인권교육전문가)

여러 연구자(문미희, 2006; 이진희, 2011; 조형숙, 2012)는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소규모 교육이 참여자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지식을 구성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인권에 대한 그리고 인권을 위한 교육이 인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직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은 이들이 현장에서 영유아 인권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혼란과 어려움을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Flowers & Shiman, 1997). 혼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 개별 보육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강의자 중심의 인권교육에서 보육교사가 자신의 보육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는 어렵다. 오히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보육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육교사는 상황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친화적 보육을 위한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다.

같은 경우 PPT로 강의하고 워크숍 포스트잇으로 나눠주고 쓰고 붙인다던지 발표한다던지... 소그룹 교육이다 보니 적어도 한 명이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하고... 다른 교육에 비하면 만족도는 높다. (K인권교육전문가)

보육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방문교육, 소규모 집합교육 후 전달연수, 기관별 교육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면담 참여자 중 일부 보육교사는 인권교육 전문가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인권교육에 참여하였다. 개별 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은 교육의 확산 측면에서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방문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과 후 이동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고 개별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규모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기관으로 가서 전달연수를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의 확산성에 있어서 소규모 교육도 방문 교육처럼 제한적인데 소규모 교육의 참여자들이 개별 기관으로 돌아가 전달연수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점을 극복하였다. 면담 참여자 중 소규모 집합교육에 참여한 동료교사로부터 전달연수를 받은 교사는 기존의 교육에 비해 전달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개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E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에 관련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원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선생님들끼리 다 모여서 원장님도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교사들 간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뜬금없이 다른 교사들이 그 방법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거 같아요. (E교사)

(다) 새로운 인권교육의 필요 2 : 둔감성에서 인권 감수성 계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현장 방문 관찰을 하거나 보육교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방문 관찰 상담도 다니는데 나가서 보면 선생님들이 민감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 약간 둔감해요. 예전의 선생님들에 비해서 내가 아이들한테 잘 하니깐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개 민감한 상태로 봐서 그런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L인권교육전문가)

인권 감수성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 감수성은 인권의 문제가 개입된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인권 감수성은 1) 특정한 상황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2)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행동의 결과를 상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3) 인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노희정, 2008; 문미희, 2005, 2006; 문용린, 2003).

보육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은 어린이집의 일과에서 영유아 인권의 요소를 발견하고, 자신의 보육 결정이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하고, 영유아와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C인권교육전문가는 개별 교사의 인권 감수성에 따라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이 발달상 미성숙하다 보니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보육교사는 안전을 염두 해 두긴 해야 하는데... 현장 관찰을 나가보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데도 팔을 확 잡아 끈다든지, 아이가 놀랄 정도로... 완력을 써서... 선생님은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 행동 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말로 해도 되고,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완력을 쓰는 거죠. 팔 두 개를 확 잡아서 옮긴다든지, (아이의 팔을) 확 잡아끈다든지... 선생님은 (아이를) 잘 본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이한테 잘못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 이라면 놀랐을 것 같아요.(K인권교육전문가)

K전문가가 언급한 위의 사례는 보육교직원이 인권 관점에서 자신의 보육행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사례에 등장하는 교사는 영유아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영유아를 보호하는 행동은 오히려 영유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만약 교사가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가 신체·정서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영유아의 보호권을 실현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인권 감수성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이 자신의 직무수행에 내재한 인권을 이해하고 영유아와 자신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가) 영유아를 위한 인권 존중 보육 : 교사와 유아가 함께 행복하기

영유아와 장시간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보육교직원이 느끼는 행복은 영유아에게 전달된다(세이브더칠드런, 2009).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의 인권과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의 인권 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떠올리면 답이 나오겠죠! 영유아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육교사의 권리도 찾아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요.(J교사)

교사가 행복하면 그 원에 등원해서 함께 머무는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의 권리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 별로 안 되는 노력이지만 교사들이 만족했기 때문에 아이의 인권도 조금 더 보호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예요.(N 교사)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함께 살아가는 두 집단이다. 어린이집에서 이들이 같은 경험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집단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높은 수준의 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경험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영유아의 인권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교직원이 인권적으로 존중받을 때 이들에게 영유아 인권의 옹호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절하게 맞추어져서 교사가 영유아 요구 사항을 제때 들어줄 수 있고, 영유아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인권친화적인 교실인 것 같습니다. (P교사)

면담 참여자들은 인권친화적인 직무환경이 영유아의 인권실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조정, 휴식시간과 적당한 수준의 보수 보장, 보조교사의 투입이나 동료 교사와의 파트너십, 원장의 인권에 대한 이해, 동료와 기관장의 이해관계, 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감 등을 언급했다.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이 보육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낮아질 때 인권친화적 보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이 낮은 경우에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개별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교육과 함께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의 수준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일례로 동료 교사나 보조교사가 함께 보육실에 근무한다면 보육교사들은 개별 영유아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 영유아에 대한 집중이 나머지 영유아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방임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면담 참여자 중 H교사와 I교사는 두 명

의 보육교사가 한 보육실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신이 감정적·신체적 어려움을 겪을 때 동료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

① 영유아의 마음 읽어주기

등원 시간에 부모님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게 적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시간에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유놀이 시간에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낮잠 시간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B교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인권실현은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원부터 하원까지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이 성인 중심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닌 인권친화적 보육이 되려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언어나 행동 속에 담긴 요구와 의견을 이해해야 한다. 심지어 부정적인 방식의 표현이라고 여겨지는 영유아의 언어나 행동도 참여·의견 존중의 원칙에 따라 존중해야 한다.

간혹 아이가 실수를 했을 경우가 있는데요... 실수보다는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상태에 더 관심을 보인 후 실수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가 그때부터는 마음을 열고 어린이집에 더 적응을 잘하고 쉬는 날 에도 어린이집에 오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어렵게 인권친화적이라는 말보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D교사)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보육교직원은 계획한 일과를 순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안감 때문에 영유아의 마음을 읽거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하기도 한다. 게다가 영유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 교사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다. Q교사는 자신이 경험하는 극도의 긴장감과 신체적 부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영어반을 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다 안아주고 스킨십이 가야 하는데 그런 정신적인 부분까지 미리 해야 하는 게 긴장상태로 여덟 시간 아홉 시간을 그것뿐만 아니라 당직시간에는 애들이 더 많으니깐 통합 보육할 때는 그 긴장감, 다른 반 아이 특성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있다는 그 긴장감 그게 진짜 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Q교사)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정서나 불안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심호흡을 하거나 물을 마시며 교사들은 상황에서 잠깐 벗어나 자신을 추스른 다음 영유아들이 보여주는 울음과 행동 그리고 표정 속에 숨은 요구에 반응하였다.

저 같은 경우 등을 좀 돌리고 잠깐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본다던가, 제 시선을 잠깐 환기시켰다가 아이를 다시 본다던가.. 그런 게 있어요. 또 나의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아이를 기다리게 하기에는 아이의 인권에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손잡고 얘기해 보자하고 올라오는 마음을 천천히 얘기를 하려고...(I 교사)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면담 참여자들은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여유와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H교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원장이나 함께 교실을 운영하는 동료 교사(메이트)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였다. N원장이 소개한 “오늘은 맑음” 프로젝트도 동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는 사례이다. N원장의 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동료 교사에게 현재의 감정 상태나 몸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무언의 약속을 만들었다. 어린이집의 성인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지지하는 문화는 보육교사의 직무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인권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제가 감정적으로 나갈 것 같으면 메이트나 원장 선생님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하고 아이들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제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깐 그런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도 미리 이야기를 해요.(H교사)

오늘은 맑음 프로젝트 했었거든요. 오늘은 맑은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스티커 두 장이 있어요. 교사들한테. 하나는 “나 건들지마”, “오늘은 좋아”, 이거 었어요. “나 건들지마” 스티커는 조그마하게 앞치마나 옷에 붙여 두는 거죠. 의미는 교사가 생리라든지, 남자친구와 이별이라든지, 혹은 뭐 부득이한 경우, 기분이 좋지 않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스티커를 우리만 알게 붙여놔요. 학부모님들은 모르시잖아요. (N원장)

어린이집이 인권친화적 환경이 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실현 되는 것이다. 영유아의 인권은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경쟁하거나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오히려 보육교직원이 누리는 인권은 영유아의 인권실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반드시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영유아의 참여권 존중하기

면담 참여자들은 영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보육을 영유아 인권실현의 사례로 들었다. 그런데 이들은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에서의 어려움으로 영유아 참여권과 관련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은 영유아가 계획된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래도 대집단활동이나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고 하는데, 그거를 모든 아이들의 생각과 그런 걸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적인 한계에서 좀 어렵죠. (Q교사)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은 사전에 계획된 일과이거나 행사에 필요한 것들이다. 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적 수준과 요구를 고려하여 활동을 계획하지만 영유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참여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워한다. 영유아의 흥미에 따른 융통성 있는 보육과정 운영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계획된 일과의 수행이 보육교사의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활동에 관심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그 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교사의 용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활동에 관심이 없다는 건 흥미가 없다는 거고, 욕구가 없다는 거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지 흥미에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수준을 조절해서 다시 한 번 제시해 줘보고 그래도 관심이 없다면 그 활동이 목표가 만약에 수에 대한 활동이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으로 변경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 활동을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B교사)

위에 제시된 B교사처럼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참여권을 존중하기 위해 자신이 미리 계획한 활동을 포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교사가 활동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와 함께 다음 활동을 협의할 수도 있다. 면담에서 교사들은 영유아가 제시된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기다려주기, 거부를 수용하기, 계획된 활동을 변경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의 참여권을 존중하고 있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영유아 중심적인 자세를 갖춘 성인이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을 경청하고 이들의 존엄성과 개별적인 견해를 존중할 때 참여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여권은 영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참여권은 자유놀이나 자유선택활동 중 어떤 영역에서 놀이할 것인지 혹은 교사가 제안한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영유아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E교사는 기본생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간식이나 점심시간에도 영유아의 참여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 인권옹호자로서 딜레마

① 교사의 책임과 영유아 인권 사이의 혼란

보육은 영유아의 권리와 교사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유아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자신의 아동 존중의 신념과는 다른 행동과 언어로 영유아를 보육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인권존중을 해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고, 양보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가르치는 게 맞지만 지금 당장 이걸 정리를 해야 하고... 일단 상황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끊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Q교사)

보육교사로서 준비된 행사(재롱발표회)에 영유아를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 발표회를 위해 울동하기를 싫어하는 영아에게 울동을 강요하고... 영유아의 인권보다는 준비 수준이나 재롱 발표회 행사에 더 비중을 두고 행사를 성공리에 진행하기 위해 영유아의 권리를 무시하고 교사의 지도 의무만 강요받게 됩니다. (P교사)

교사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하루를 잘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 외에도 영유아들의 행동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영유아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열성적인 선생님일수록 우를 범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훌륭한 교사이고 열심히 한다고 수업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유아반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 이야기를 꼭 교육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한두 명씩 산만하거나 떠드는 아이들은 그 수업 시간을 위해서 계속 혼나게 되거든요. 선생님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 서는 전혀 그 수업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K인권교육전문가)

위 사례처럼 교사가 자신의 사전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할 때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둔감하게 되고 이는 자칫 영유아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은 면담 참여자들이 보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 인권의 침해 사례로 언급한 내용이다.

- 부모님과 함께 하는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다그치면 연습을 시키는 경우
- 화장실을 시간을 정해 놓고 단체로 가는 경우
- 영유아들의 능력보다 부모들의 요구를 더 수용하여 영유아들에게 강요할 때
- 손이 많이 가는 영유아들로 인해 모범적이거나 순한 영유아들에게 교사의 손이 못 미치는 경우
- 친구가 장난감을 다 놀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난감을 받아서 놀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리 시간이 돼서 정리하라고 할 때
- 아이의 이름보다 ‘야’라고 부를 때
- 영유아들의 편식 지도를 위해 억지로 다 먹어야 함을 언어로 협박하거나 다른 활동을 못하게 금지할 때
- 낮잠 자고 싶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재울 때
- 놀이 중 교사가 봤을 때 다른 아이의 싸움이 날까 봐 미리 영유아의 자리를 갑자기 분리해 버릴 때
-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행동을 잘못하였다고 장시간 타임아웃 할 때
- 영아가 귀가시간에 배변 보는 아이의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 귀가 지도를 할 때
- 물을 달라고 하는 아이한테 시간이 지난 후 물을 나중에 줄 때
-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교사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할 때

- 자유놀이 활동이나 점심시간에 대해 무조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야 함을 강조할 때
- 자유선택 놀이시간에 정해진 놀이만을 하게 할 때
- 교사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보다 강한 화를 표현할 때
- 교사가 영유아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생 반에 보낼 거야’, ‘경찰 아저씨께 전화한다.’ 또는 ‘도깨비 아저씨에게 이야기한다.’ 등의 언어적 협박을 할 때

② 학부모의 요구로 인한 갈등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인권친화적 보육의 실천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력은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후 삶의 성공 요인이다(재인용. Driscoll & Nagel, 2008).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관계는 영유아가 경험하는 보육의 질에 결정적 변인이 될 수 있다. 가정의 주요 양육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배려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보육교직원은 가정과의 관계를 어려워한다. 이런 어려움은 부모가 보육교직원과 다른 영유아에 대한 관점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더욱 가중된다. 다음에 제시된 A교사와 E교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어머니들도 민감하신 분들은 햇빛 알려지 난다, 애 모기 물린다, 태클 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애는 알려지 있어요. 천식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나가야지 하면서 들어와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수업 방향이 정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A교사)

어떤 아이는 원래 배가 작아서 잘 못 먹는 아이인데 키가 작으니깐 부모님이 무조건 애는 남기는 거 없이 다 먹여 달라, 이렇게 되었을 때 제일 난감해요. 작년에 작은 앤데, 애는 정말 먹는 게 힘든 애예요. 이 정도 먹어도 충분히 뛰어놀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 데 부모님은 억지로 다른 아이들의 두 배를 무조건 먹여서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쑤셔 넣는 거예요. 애는 맨날 먹기 싫다고 울고 저희도 중간 입장에서 엄마한테 계속 전달을 해요 (E교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순간부터 하원하는 순간까지 보육교직원은 수많은 결정을 내린다. 매순간 보육교직원은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윤리강령과 표준보육과정 등을 참조하여 영유아와 이들의 권리실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상황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보육교직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양육자가 자녀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요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보육교직원은 심각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물론 보육교직원은 양육자의 요구나 기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에게 최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입장과 가치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개별 기관이나 보육교직원이 양육자의 요구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 나아가 부모 역시 영유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영유아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가정에서부터 지켜주며 어린이집 교육과정 특별 활동, 가정, 영유아의 주변 환경 및 영유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에서 영유아의 인권 가치의 원칙을 지키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교사)

P교사는 양육자가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양육자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이며 이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양자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양육자가 성인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지도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은 양육자가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 보육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양육자를 위한 인권교육은 가정을 인권친화적 맥락으로 변화시켜 가정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 한다.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갖는 경험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은 가정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는 수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양육자가 영유아 중심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절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보육교직원과 인권교육 전문가 총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개 범주 즉 ‘영유아 인권에 다가서기, 교사 인권교육 탐색하기’,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가 도출되었다. ‘영유아 인권에 다가서기’는 ‘영유아 인권은 내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것’, ‘보호받는 존재에서 인권의 주체로’의 2개 하위 범주로, ‘교사 인권교육 탐색하기’는 ‘다른 교육 속 작은 주제 집합 인권교육’, ‘문제 중심의 토론형 인권교육’, ‘둔감성에서 인권 감수성 계발’의 3개 하위 범주, 그리고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는 ‘교사와 영유아가 함께 행복하기’, ‘인권친화적 보육 실천’, ‘인권옹호자로서 딜레마’의 3개 하위 범주로 나타났다.

IV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1. 교재의 목적 및 목표
2. 교재의 내용
3. 교재의 구성원리와 구성
4. 교재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

1. 교재의 목적 및 목표

이 교재는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는 목적을 위해 개발되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의 주체인 영유아에 대한 인식,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에 대한 예방책 마련과 세계인권교육의 동향에서 찾을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현직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영유아의 보호권과 발달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집이 영유아 인권이 실현되는 맥락이 되려면 교사가 영유아가 보유한 모든 권리를 이해하고 보육 일상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식, 기술,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이 교재는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을 이해하고, 둘째,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셋째,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넷째,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교재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자신과 영유아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진 권리이며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영유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권리를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유자이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러 자질이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의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들이 자신의 인권에 대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보육현장과 자신의 직무를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부모만큼이나 영유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영유아가 보유한 모든 권리가 어린이집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 스스로 인권 관

점에서 자신의 직무를 살피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직무를 소극적인 영유아 보호에서 적극적인 영유아 인권 실현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은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보육과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보육현장의 일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은 인권옹호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더욱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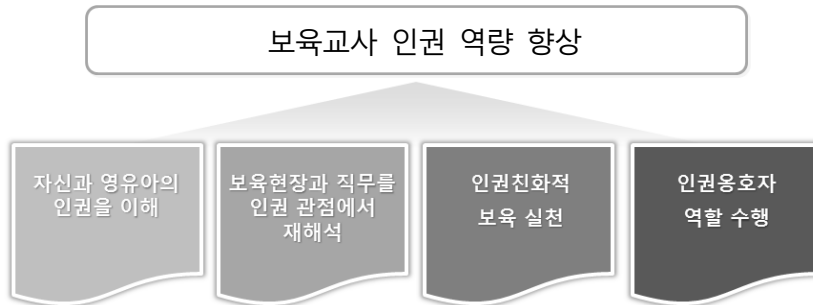
셋째, 보육교직원이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할 수 있다.

다양한 발달적 요구와 흥미를 가진 있는 영유아들로 구성된 어린이집 환경에서 보육교직원은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효과적으로 통합·조직하여 인권친화적 보육을 수행해야 한다. 이 교재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보육교직원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된 요인과 인권친화적 교수법을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보육교직원에게 제시된 상황은 설문과 면담을 통해 추출된 것이다. 친숙한 상황을 인권관점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인권친화적 보육법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보육교직원이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일상적인 보육현장에서 인권의 가치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4대 권리 영역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교재는 보육교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어린이집을 인권친화적인 보육환경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실천할 방안을 네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교재의 목적 및 목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2. 교재의 내용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의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이 교재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연구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및 면담결과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에 나타난 보육교직원들의 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인권에 대한 법·제도, 인권 감수성,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영유아의 권리와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따라서 이 교재는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및 면담 결과와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교재는 다음의 <표 IV-1>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IV-1>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의 내용

구분	제목	주요 내용	
제 1장	인권에 다가서기	인권의 정의	-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와 발전	-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 유엔과 인권의 발전 - 유엔과 비정부기구
		인권의 분류와 내용	-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인권분류 - 인권의 이론적 분류
		인권의 특성과 원칙	- 보편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 - 도덕성, 우월성, 근본성, 추상성 - 차별 없는 평등과 자유 - 소수자 보호 -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한국사회와 인권	-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제 2장	영유아 인권과 마주하기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적 발전과정	-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주요 내용	-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 아동권리협약의 권리 영역
제 3장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 영유아와 영유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 권리주체인 영유아의 취약성 - 영유아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의 의미
		영유아 인권과 보육 그리고 보육교직원	- 영유아 인권과 보육 - 의무이행자로서의 보육교직원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역할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자질 -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한 보육현장의 구조적 지원
		보육교직원 윤리강령 탐색하기	
제 4장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딜레마상황	
		보육 일과 속 영유아의 인권	- 등원: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요 - 자유놀이시간: 내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 자유선택활동: 다른 놀이 하고 싶어요 - 대집단활동: 이 활동 안 하고 싶어요 - 정리정돈: 더 놀고 싶어요! - 점심식사: 안 먹고 싶어요
제 5장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인권의 관점에서 나를 살펴보기	
		인권친화적 교수자 되기	
		상호존중과 돌봄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기	
		가정을 인권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특히 이 교재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그리고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재인용; Levin, 2012)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인 측면의 인권교육이다. 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의 역사, 인권 관련 주요 국제문서, 인권실현의 기제 등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기본적 권리 및 권리침해를 이해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권을 위한 교육은 가치와 태도에 관련한 인권교육이다. 인권을 위한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인권 가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화기 위한 헌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점에서 인권을 위한 교육은 인권 감수성 함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교육이 교육자와 학습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첫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위해 교재는 인권과 아동권리협약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의 정의, 인권의 역사와 발전과정,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특성과 원칙, 한국사회와 인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기본적 권리와 권리침해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을 위해 이 교재는 자신의 일상에 내재한 인권을 이해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는 기초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인권 딜레마 상황과 영유아 인권이 실현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보육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인 보육교직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교재는 유엔과 여러 인권교육 관련 문헌에서 언급한 것처럼 게임, 톨플레이, 미술적 표현방식, 글쓰기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3. 교재의 구성원리와 구성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식, 즉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 교재는 제1단계와 제2단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한 인권교육 관련 문헌과 기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재의 구성원리와 교수법의 토대가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인권에 대한 지식은 물론 가치와 태도 형성을 고르게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 관련 문헌은 인니적인 측면의 인권에 대한 교육과 가치와 태도 형성을 위한 인권을 위한 교육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보육교직원의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탐색한 문헌들도 지식과 가치와 태도 형성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과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정보전달 중심의 인권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식, 기술, 태도를 균형 있게 포함하는 인권교육을 지지한다.

둘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학습자의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 선행 문헌은 학습자가 인권에 관련한 사실과 기본 요소를 자신의 생활 경험 기반 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은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 외에도 학습자가 추상적인 개념과 가치를 자신의 생활과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인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면담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에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면서 인권친화적 보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음을 보고하였다.

셋째, 인권교육의 교재는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여러 선행문헌은 인권교육이 일방적인 전달형식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능동적인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습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소규모 교육은 대규모 교육보다 학습자의 변화를 끌어내는데 효율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 역시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의 인권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육교직원들은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토론형과 두 유형의 혼합형 교수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원리를 적용하였다.

첫째, 보육교직원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습득해야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을 같은 비중으로 다룰 수 있도록 고려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각 장의 인권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본 교재의 각 장은 들어가며 → 사전 활동 → 본 활동 → 사후 활동의 순서로 구성하여 일관성과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진행시간, 방법 등은 특히 참여자의 특성과 진행 환경 및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경험이 주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즉 현장성 있는 생생한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교직원이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이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하여 상황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비판적 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보육교직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이에 주요 내용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현장에서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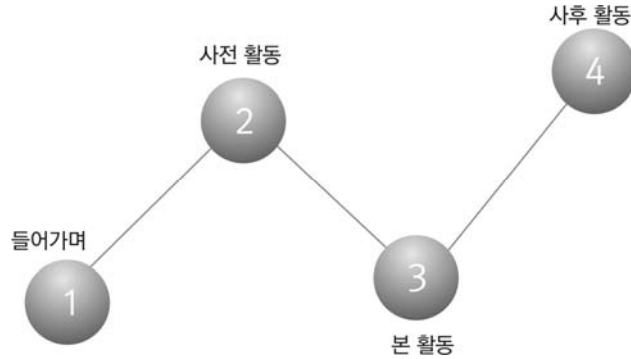
여섯째,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 참여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일곱째, 보육교직원 자신의 인권 경험 살펴보기, 반성적 사고, 경험 나누기 등을 위해 소집단 토의를 먼저 적용한 후,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여덟째,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의,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 소집단 토의, 역할극, 창의적 표현, 게임,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한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해 이 교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의 주제 1) 인권에 다가서기 2) 영유아 인권을 마주하기 3)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4)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나아가기 5)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장을 가능한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장의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 프로그램의 각 장별 구성

교재의 각 장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구성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들어가며’는 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권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짧은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둘째, ‘사전 활동’은 본 활동에 대한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활동’은 각 장에서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나 소집단 토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사후 활동’은 ‘본 활동’에서 습득한 주요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고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4. 교재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

이 교재에서 주로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의 <표 IV-2>와 같다.

<표 IV-2>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

기법	내용
강의	인권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식 방법
브레인스토밍	인권 관련 제시어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합하고 수정하고 삭제해 나가는 방법
사례연구	주어진 사례에 대해 소그룹으로 나누어 인권의 관점으로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
소집단 토의	2~6인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인권에 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
역할극	인권 관련 상황을 짧은 이야기나 상황극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창의적 표현	이야기, 시, 그래픽 미술, 조각, 연극, 노래, 무용 등으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
게임	인권에 대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인권을 알아가는 방법
시청각자료	철판, 포스터, 전시물, 차트,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영화 등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권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한편 본 교육 프로그램의 각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각 활동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IV-3>과 같다.

<표 IV-3> 교재의 각 장별 활동에 적용된 교수-학습 방법의 예

구분	제목	활동명	교수 방법의 예
제 1장	인권에 다가서기	인권은 ○○○이다.	브레인스토밍
		내 인생의 인권사건	소집단 토의
		숨어있는 인권을 찾아라!	게임
제 2장	영유아 인권을 마주하기	내가 가졌던 권리, 내가 지켜준 권리	소집단 토의
		삐삐롱스타킹	역할극
		영유아 인권 다이아몬드	소집단 토의
제 3장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다시 살펴본 영유아보육의 주요 인물	사례연구
		영유아 권리존중을 위한 자가 진단표	소집단 토의
		인권으로 다시 쓰기	창의적 표현
제 4장	인권친화적 보육교사로 살아가기	나의 하루	소집단 토의
		인권으로 다시 보는 나의 하루	소집단 토의
제 5장	인권옹호자로 나아가기	인권친화적 보육교사	소집단 토의
		내 동료를 소개합니다	사례연구
		인권 씨앗 하나가 땅에 묻혀	창의적 표현



결론 및 제언

- 1. 결론
- 2.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의 필요성은 보육현장 안팎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유엔의 영유아기에 대한 재개념화된 관점은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을 요청한다. 영유아가 성인과 동등하게 온전한 권리 보유자라면 어린이집은 이들의 인권이 실현되는 맥락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인적환경인 보육교직원이다. 이들의 인권 역량은 영유아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 영유아 인권 실현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이 요구된다.

둘째,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방식 중 하나가 CCTV 설치 및 운영이다. 그러나 CCTV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CCTV를 통한 일상적인 감시는 보육교직원을 보육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면담은 이런 소외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육교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Hands-Off” 전략을 채택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영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영유아 학대 예방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영유아 인권 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계인권교육 동향이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과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동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비교했을 때 시기적으로 약간 늦은 편이다. 하지만 자격 유지 및 승급에 필수적인 과목이라는 점에서 보다 의무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아동을 보호하는 의무이행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는 제한이 있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인권교육의 학습자가 자신의 인권을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현재 보육교직원의 현직 교육에서 이

루어지는 인권교육은 그 내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재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범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인권 관련 선행문헌 검토
- 2)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 맥락의 파악을 위한 보육 현황 조사
- 3)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수행된 인권 관련 선행문헌 검토
- 4) 인권교육 관련 문헌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 5)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 6) 현장 보육전문가 및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

이 연구에서 실시한 인권교육 관련 문헌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그리고 보육교직원을 비롯한 현장 보육전문가 및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의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감수성, 인권 친화적인 보육의 실천능력,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직전 교육 중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전체에서 50.2%, 재직 중 인권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전체에서 66.3%로 나타났다. 이들이 교육받은 인권교육의 내용을 보면, 직전 교육에서는 영유아 보호권에 따른 보육교사의 역할(94.8%), 발달권에 따른 보육교사의 역할(93.1%)이 가장 높았다. 그에 비해 59.9%만이 인권 감수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직교육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90.6%),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90.3%),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90%)이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65.5%만이 인권 감수성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에서 보육교직원의 50%정도가 인권교육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유아 보호권에 매우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실제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고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인 인권 감수성을 학습한 기회는 상당히 부족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면담결

과 역시, 보육교사들이 원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 감수성과 인권친화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유아를 위한 인권 감수성은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동안 그들의 자유와 선택, 참여, 존엄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의미로 학습되어야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범주 중 요구가 높았던 영유아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환경,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 인권 존중 보육 일과는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 감수성, 인권친화적인 보육의 실천능력,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보육현장의 일과에서 매일 직면하는 사례 중심의 통합적 교수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직전 교육에서는 인권교육 교수법 중 강의형이 85.5%로 인권교육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형은 3.5%, 반성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반성적 저널 작성은 0.3%, 활동형은 0%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재직 중 받은 인권교육에서도 강의형이 87.7%로 가장 많이 적용된 교수법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론형은 3.1%, 발표형과 활동형은 0.8%, 반성적 저널 작성은 0%로 상당히 저조하게 다루어졌거나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상당수 강의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인권교육에서 다수의 선행문헌과 전문가들의 주장과 매우 상반된 것이다. Flowers와 Shiman(1997)은 강사가 주도하는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수동성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교인권길라잡이에서 제시된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 창의적 표현, 토론, 현장견학이나 지역사회 방문, 인터뷰, 연구프로젝트, 역할극이나 시뮬레이션, 시각자료 등이다.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2013)는 이미지학습, 단어연상, 소집단 협력학습, 질문학습, 신문활용교육 등을 인권교육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외 인권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의형을 포함하지만 참여적 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로 인권친화적 보육환경을 실현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강조하고 있는 동향이다. 앞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직원들은 인권교육의 교수법 중 강의형, 토론형에 대해 높게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강의형, 토론형, 발표형, 활동형, 반성적 저널 작성을 모두 포함한 통합형 교수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면담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 역시 이론이나 교재 중심의 내용을 전달하는 교수법 보다는 사례 중심의 교수법, 문제 중심의 토론형 교수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즉 일방적으로 듣고 학습하는 방식의 교수법으로부터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교수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하루 일과에서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사례 중심의 통합적 교수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직전 교육 및 현직 교육 중심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직전 교육차원의 인권교육 강화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직전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전반은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다.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 인권의 관점으로 자신의 직무를 재해석하는 과정, 인권친화적 보육을 실천하는 과정, 인권옹호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전 교육에서 인권교육은 더욱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2015년 9월 입법예고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에서 인권교육이 강화가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주요 가치와 내용은 단순히 특정 교과목 수준에서 이루어질 차원은 아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모든 교과목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변화

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정비될 필요도 주장한다.

둘째, 보육교사 재교육을 담당하는 현직 교육차원의 인권교육 강화이다.

2008년 이후 보수교육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교과목으로 다루어지면서 현직 교육에서 아동학대 및 예방,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실제 현직 교육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경험하였으나,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직 교육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새롭게 개편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현직 교육차원의 인권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인권교육에 접근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직무환경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58.4%의 보육교직원이 실제 보육업무를 한 이후 이루어지는 현직 교육의 시간대에 관한 불편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실제 8시간 이상의 근무 후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그들의 직무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행은 좀 더 보육환경의 구조와 보육교직원의 실태를 고려한 교육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은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육현장은 영유아 인권의 실현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담의 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의 교수법 및 운영방식에서 보육교직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실시되는 인권교육이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즉 인권친화적 교수법은 일련의 행동지침의 형태로 보육교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 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윤진희, 2006; 이명순, 2012).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보육상황에서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인식과 실천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교실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교수법을 구성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찰적 사고를 통해 보육교직원 스스로 인권친화적 보육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조형숙(2012)과 문미희(2006)의 연구는 학습자를 의미구성자로 개념화하는 입장의 교육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형숙은 영유아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실질적 가

치판단과 행동규준(조형숙, 2012, p.376)”으로 작용하려면 교직원윤리를 교육하는 과정에 “윤리의식 개선 뿐 아니라 도덕적 추론능력, 반성적 사고능력”(p.387)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일상과 추상적인 인권 사이의 매개자 역할(구미향, 황소영, 2014)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보육교직원을 위한 현직 교육의 추진 체계는 보건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별 관할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러한 담당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인권교육 연수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 김한민, 백영애 (2002).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미향, 황소영 (2014). 유아교사의 유아인권에 관한 인식 변화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7), 119-137.
- 구정화, 송현정, 설규주 (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 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교재(아동용).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5. 아동권리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노인분야 인권교육 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9).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3).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 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2008). 국군인권교육교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2014). 군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노인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다문화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4). 장애인분야 인권 감수성 향상과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제아동인권센터(2014). 알쏭달쏭 권리 알권리: 팡팡이와 함께 하는 유아인권이야기(이론편). 서울: 유아림.
- 김근희 (2007). 보육시설 유형과 처우개선비에 따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미 (2012).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 신념, 행복감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 유아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Ⅲ. **유아교육학논집**, 12(4), 299-323.
- 김영은, 신정숙 (2012).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1), 283-306.
- 김은영, 장혜진, 조혜주 (2013). 영유아 교사 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 (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인숙, 현은강, 황소영, 정병수 (2011). 유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정화 (2014). 유아교사의 유아 권리 인식과 유아 권리 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343-364.
- 김진숙 (2009).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 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 서영숙, 서혜정 (2010). 아동권리교육이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인식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4(6), 35-60.
- 김태운 (2012).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조직문화와 조직몰입과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 이슬기, 김경희 (2014). 보육교사의 이직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3(1), 137-157.
- 나달숙 (2011).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1(1), 85-121.
- 나종일 (2012). 자유와 평등의 인권선언 문서집. 파주: 한울.
- 남궁선혜, 김현정 (2011). 유아인권 및 유아인권교육에 대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 연구. **아동보육연구**, 7(2), 5-28.
- 노희정 (2008). 개념분석 수업모형을 활용한 초등학교 인권교육. **초등도덕교육**, 28, 71-97.
- 류수정 (2012).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및 아동권리 보장 실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동규, 김영희, 허은경 (2012).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관련변인의 메타회귀분석. **유아교육학회지**, 16(1), 213-234.
- 문미희 (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경기: 한국학술정보.
- 문미희 (2006).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의식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Rest의 도덕성의 4구성 요소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0(2), 341-362.
- 문용린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155.
- 박병도 (2007).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입법정책**, 1(1), 35-65.
- 박진완 (2010).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세계헌법연구**, 16(1), 181-208.
- 박한비 (2014).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아동의 인권상황 및 문제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향아 (201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유형화와 아동을 위한 내용의 재구성. **교육이론과 실천**, 12(2), 103-120.
- 배화옥, 심창학, 김미옥, 양영자 (2015). 인권과 사회복지. 경기: 나남.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3차 지표 시범사업용.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a). 아동권리협약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육교사용). 서울: 보건복지가족부·세이브더칠드런.
-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 (2009b). 유아 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

- 육·보육행정연구**, 13(3), 215-232.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 인권 민감성 향상 교육.
- 서혜정, 김진숙, 서영숙 (2010).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 감수성 증진을 위한 문제 중심학습의 효과.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1), 85-116.
- 세이브더칠드런 (2012). 예비교사 대상 아동 인권 교육의 실태, 필요성 및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설규주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4(1), 27-56.
- 송정애, 장정순 (2011). 예비보육교사의 인권 감수성과 아동권리 인식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육학회지**, 20, 23-53.
- 안경환 (2008).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양순경 (2012). 유아 권리에 대한 교사의 의식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21(2), 181-196.
- 양천수, 배병일, 이부하, 오완호, 박정원, 이윤주 (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오병선, 박종보, 김비환, 홍설필, 박경서 (2011). 인권의 해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우병창 (2011).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우리법의 정비. **안암 법학**, 34, 477-522.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2006). 학교인권교육 길라잡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 일반논평 7 초기유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6). 일반논평 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권리[GENERAL COMMENT NO. 8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진희 (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노홍 (2013). UN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이배근 (1998).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 7, 357-379.
- 이명순 (201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어린이집 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 이은주 (2013). 아동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이행 수준. **아동과 권리**, 17(2), 265-284.
- 이명조 (2007). 가정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직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1-27.
- 이미식 (2008). 아동의 인권능력(capacity)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5(1), 185-212.

- 이연승, 최진령 (2013). 보육교사의 급여에 따른 보육시설의 근무환경과 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7(1), 297-315.
- 이재연 외 (2015). 아동권리 0-8: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경기: 교육과학사.
- 이재연, 이소라 (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아동권리연구**, 2(1), 25-41.
- 이진희 (2011). 영아보육교사의 요구를 반영한 현직연수 경험 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5(3), 51-73.
- 이진희, 홍혜경 (2011). 영아 보육교사 현직연수 프로그램이 교사의 효능감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16(4), 233-260.
- 이혜원(2001).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 아동복지법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44(3), 262-287.
- 임양미, 이명신 (2008). 유치원·보육시설 교사의 현직 교육 요구도 및 직무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한국영유아보육학**, 54, 23-51.
- 정오순 (2009).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원의 인식 및 아동권리교육 탐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이 (2014). 보육교사의 인권의식 및 민감성과 영유아 학대 인식 간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숙 (2012). 유아교사의 교직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모형 개발. **유아교육교육학논집**, 16(4), 373-394.
- 조효제 (2008). 인권의 풍경. 서울: 교양인.
- 주효경, 이광자, 김현숙 (2013). 인권 감수성 훈련이 정신간호사의 인권의식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2(3), 169-179.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5). 보육교직원의 인성함양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
- 최윤경, 김재원 (2011). 보육교직원 보수체계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 (201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규모, 학력, 연령계층,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 하승수 (2011).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서울: 두리미디어.
- 하승수 (2012). 젊은 지성을 위한 세계인권사. 서울: 두리미디어.
- 한국유네스코 역음 (2002). 인권이란 무엇인가? 서울: 오름.
- 한국보육진흥원(2013). 아동학대자 교육명령제 도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 한국사회교육연구회 (2013). 21세기 세계화 시대 유·초·중·고교의 인권교육 탐색 핸드북. 서울: 교육과학사.
- 한지숙, 홍은주 (1998).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실현. **아동과 권리**, 2(2), 39-51.
- 현미옥, 송순 (2008). 보육교사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4(2), 81-109.
- 황옥경 (2012). 영유아기 권리에 대한 유엔의 권고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1), 27-49.
- Amnesty International (2012). *Becoming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A guide for schools around the world*.
- Amnesty International (2012).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Module one-poverty*

- and human rights.*
- Benedek, W. (2006)(Ed.). *Undertrading human rights: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ein: NWV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COMMENT NO. 7 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Donnelly, J. (2002).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 practice*(2nd e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Driscoll, A., & Nagel, N. G. (2008). *Early childhood education, birth-8: The world of children, families, and educators.* Boston: Pearson.
- Fields, A. B. (2013). 인권: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Rethinking Human Rights for the New Millenium*]. (박동천 역). 서울: 모티브북. (원전은 2003에 출판)
- Freeman, M. (2005). 인권: 이론과 실천[*Human Righ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김철효 역). 서울: 아르케. (원전은 2003에 출판)
- Flowers, N., Bernbaum, M., Rudelius-Palner, K., & Tolman, J. (2000).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MN: University of Minnesota.
- Flowers, N., & Shiman, D. A. (1997). Teacher education and the human rights vision, in G. J. Andreopoulos & R. P. Claude(Eds),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atch, J. A. (2008). 교육 상황에서 질적 연구 수행하기[*Doing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Settings*]. (진영은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2에 출판)
- Hoffman, D., & Rowe, J. (2009). *Human Rights in the UK: An Introduction to the Human Rights Act 1998.* Harlow,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 Institute for the Development of Gifted Education (2012). *Teacher Compendium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iversity of Denver.
- Johnson, R. T. (2000). *Hands Off: The disappearance of touch in the care of children.* New York: Peter Lang.
- Levin, L. (2012). 인권[*Human Rights*]. (이명재, 서현수 역). 서울: 북스코프. (원전은 2012에 출판).
- Mac Naughton, G., Hughes, P., & Smith, K. (2007). Early childhood professionals and children's rights: tensions and possibilities around the United Nations General Comments No. 7. on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Years Education, 15*(2), 161-170.
-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2012). A Guide for Ontario School.
- Schulz-Reiss, C., & 공현 (2010). 청소년 인권수첩[*Nachgefragt: Menschenrechte und Demokratie*].

(안미라 역). 서울: 양철북. (원전은 2008에 출판).

Thorpe, K., Boyd, W., Ailwood, J., & Brownlee, J. (2011). Who wants to work in child car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consideration of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36(1), 85-94.

Zaman, A., Amin, R., Momjian, I. E., & Leil, T. (2012). Complexities in managing the child care industry: an observation on challenges and potentials. *Education*, 132(4), 739-753.

부 록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의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년 보육교직원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재개발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설문에 참여하는 시간은 약 15~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설문지는 우편, 전자메일 혹은 대면방식으로 배부·수거됩니다. 설문지의 질문은 선생님의 인권교육 경험과 요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신체적·심리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고 설문지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지는 코딩작업이 종료된 후 즉시 폐기될 예정입니다. 설문내용 중 일부는 응답자의 개인 신상, 보육교사 자격취득 경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시설 유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는 즉시 코드화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바탕으로 선생님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학술목적의 경우를 제외하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학술적 목적으로 발표될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으로 선생님께서 연구참여에 동의하시면 설문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생님께는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음을 알립니다. 설문지 작성에 앞서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연구자 윤재희(영남대학교 유아교육과 jaehui.yoon@ynu.ac.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진은 선생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하신 설문지에 담긴 의견을 귀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이 소중한 자료가 되어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월 일
 연구주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기획과
 연구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윤재희
 공동연구원: 이효정, 김성숙, 김영희

제 1 부 인구사회학적 배경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① 남 ___② 여 (만 ___)세
-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이 소재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① 서울 및 경기 ___② 경남 및 경북(부산, 대구, 울산 포함) ___③ 전남 및 전북(광주)
 ___④ 충남 및 충북(대전, 세종) ___⑤ 강원
- 현재 근무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___① 국공립어린이집 ___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___③ 법인·단체 등어린이집 ___④ 직장어린이집
 ___⑤ 가정어린이집 ___⑥ 부모협동어린이집 ___⑦ 민간어린이집
- 선생님의 보육경력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4. 선생님의 보육경력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4-1. 보육교사 경력 → 만 _____ 년

4-2. 원장 경력 → 만 _____ 년

5. 현재 담당하고 계신 영유아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 ___① 만 1세 미만 ___② 만 1세 ___③ 만 2세 ___④ 만 3세
 ___⑤ 만 4세 ___⑥ 만 5세 ___⑦ 혼합연령(만 _____세 ~ 만 _____세)

6.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의 현재 직급은 무엇입니까?

- ___① 보육교사 ___② 원감 ___③ 특수교사 ___④ 원장 ___⑤ 기타

7.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___① 고등학교 ___② 전문대학
 ___③ 4년제 대학교 ___④ 대학원 석사이상

8. 선생님의 최종전공은 무엇입니까?

- ___① 사회복지학 ___② 아동복지학 ___③ 아동학 ___④ 영유아보육학
 ___⑤ 유아교육학 ___⑥ 해당없음

9. 선생님이 최초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 ___① 보육교사교육원 ___② 평생교육원 ___③ 전문대학 ___④ 4년제 대학교
 ___⑤ 대학원 이상 기타 ___⑥ 학점은행제 ___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0. 선생님이 최초 취득했던 보육 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___① 보육교사3급 ___② 보육교사2급 ___③ 특수교사 ___④ 원장

11. 현재 선생님이 취득하여 가지고 계신 보육 관련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 11-1. 보육교사 ___① 보육교사3급 ___② 보육교사2급 ___③ 보육교사1급 ___④ 원장 ___⑤ 특수교사
 11-2. 유치원교사 ___① 유치원 2급 ___② 유치원 1급 ___③ 원감 ___④ 원장 ___⑤ 특수교사

제 2 부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

○ 선생님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받은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은 무엇입니까?

- ① 보육 교과목 ② 교양 교과목
 ③ 연수 및 특강 ④ 기타 (_____)

1-2. 인권교육을 받은 총 시간은 어떠합니까?

- ① 5시간 미만 ② 6-10 시간
 ③ 11-15 시간 ④ 16-20 시간
 ⑤ 한 학기 동안

1-3. 다음의 내용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 | | |
|--|------------------------------|--------------------------------|
| 1)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3) 인권에 관한 법·제도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4) 인권감수성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보장, 참여 및 의견존중)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6)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7)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8)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9)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0) 영유아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1)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환경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2)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일과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3) 영유아인권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4) 영유아인권 관련 이슈
(성폭력, 안전, 학대, 유괴, 납치, 실종 등)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1번 분항 종료

1-4.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무엇입니까?

__① 강의형
__② 토론형
__③ 발표형
__④ 활동형
__⑤ 혼합형
__⑥ 반성적 저널작성

1-5.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하지 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1-6.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은 무엇입니까?

__① 교육내용의 적절성
__② 교육내용의 현장적용가능성
__③ 강사의 전문성
__④ 교수방법
__⑤ 교재의 활용 가능성
__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번 문항 종료

○ 선생님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과정 중에 받은 인권교육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2. 선생님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__① 있다

__② 없다

2-1. 인권교육을 받은 과정은 무엇입니까?

__① 직무교육
__② 승급교육
__③ 특별직무교육
__④ 법인 및 재단 교육
__⑤ 지역별 특강 및 연수
__⑥ 어린이집 자체교육
__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1.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① 인권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__② 인권교육의 교육대상자가 아니어서
__③ 인권교육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__④ 인권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__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2. 인권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 ① 대학 (연구소)
- ② 보육교사교육원
- ③ 육아종합지원센터
- ④ 보육시설연합회
- ⑤ 정부 및 지자체
- ⑥ 인권 및 아동 관련 비영리단체
- ⑦ 보육 관련 법인 및 재단

2-3. 다음의 내용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 | | | |
|---|------------------------------|--------------------------------|
| 1)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3) 인권에 관한 법·제도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4) 인권감수성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5)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보장, 참여 및 의견존중)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6)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7)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8)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9)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0) 영유아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방법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1)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환경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2)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일과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3) 영유아인권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와 협력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14) 영유아인권 관련 이슈
(성폭력, 안전, 학대, 유괴, 납치, 실종 등) | <input type="checkbox"/> ① 예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2-4. 인권교육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집합교육
- ②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 ③ 전달연수
- ④ 온라인 교육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2. 받지 않았다면, 인권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중복응답가능)

- ① 교육시간대
- ② 교육장소까지의 거리
- ③ 교육기간
- ④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 ⑤ 비용부담
- ⑥ 원장의 관심부족
- ⑦ 과중한 업무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번 문항 종료

2-5. 다음 중 어떤 교육과 연계하여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 ① 차별(장애/성차별) 예방교육
- ②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③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 ④ 약물의 오남용 예방
- ⑤ 재난대비 안전
- ⑥ 교통안전
- ⑦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
- ⑧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 인성교육
- ⑨ 장애통합 및 다문화 교육
- ⑩ 아동권리교육
-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6. 인권교육의 교수법은 무엇입니까?

- ① 강의형
- ② 토론형
- ③ 발표형
- ④ 활동형
- ⑤ 혼합형
- ⑥ 반성적 저널작성

2-7.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하지않음	만족하지 않음	보통	만족함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2-8.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운영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① 교육시간대
- ② 교육장소까지의 거리
- ③ 교육기간
- ④ 대체교사 확보 어려움
- ⑤ 비용부담
- ⑥ 원장의 관심부족
- ⑦ 과중한 업무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9. 인권교육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교육 요인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가능)

- ① 교육내용의 적절성
- ② 교육내용의 현장적용가능성
- ③ 강사의 전문성
- ④ 교수방법
- ⑤ 교재의 활용 가능성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제 3 부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요구에 관한 질문

○ 보육교직원의 인권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1.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권 침해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유아인권 침해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의사소통 부재 ② 선택과 결정에서 제외 ③ 부당한 차별대우
 ④ 행동제한 ⑤ 신체적 체벌 ⑥ 공간분리
 ⑦ 기회소거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등원 및 귀가 지도 ② 대소집단 활동 ③ 자유선택놀이
 ④ 점심 및 간식 ⑤ 기본생활습관 지도 시간 ⑥ 실외자유놀이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인권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보육과정 ② 보육교사 ③ 관련 법 및 제도적 기반
 ④ 보육환경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5.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떤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직전교육 ___② 직무교육 ___③ 승급교육 ___④ 특별직무교육
___⑤ 기관 별 자체교육 ___⑤ 특별연수 및 특강 ___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집합교육 ___② 방문교육 혹은 컨설팅 ___③ 전달연수 ___④ 온라인 교육

8.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강의형 ___② 토론형 ___③ 발표형
___④ 활동형 ___⑤ 혼합형 ___⑥ 반성적 저널작성

9.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몇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 3시간 이내 ___② 6시간 이내 ___③ 9시간 이내
___④ 9시간 이상 ___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0.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아래 제시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②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③ 인권에 관한 법·제도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④ 인권감수성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익, 생명·생존 및 발달보장, 참여 및 의견존중)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⑥ 영유아 생존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⑦ 영유아 보호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⑧ 영유아 발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①	포함하지 않아도 됨 ②	보통 ③	포함해야 함 ④	매우 포함해야 함 ⑤

⑨ 영유아 참여권과 보육교사의 역할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⑩ 영유아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방법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⑪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환경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⑫ 영유아인권 존중 보육일과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⑬ 영유아인권실현을 위한 부모 및 지역사회 와 협력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⑭ 영유아인권 관련 이슈 (성폭력, 안전, 학대, 유괴, 납치, 실종 등)	전혀 포함하지 않아도 됨	포함하지 않아도 됨	보통	포함해야 함	매우 포함해야 함
	①	②	③	④	⑤

제 4 부 영유아인권 실행수준에 관한 질문

○ 현재 선생님께서 다음 문항에 제시된 권리를 얼마나 실행하고 계신지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영유아의 등원 시 눈을 맞추고 반갑게 맞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영유아와 즐겁게 대화하며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영유아가 놀이나 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예고 시간을 여러 번 꼭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언제든지 영유아가 자유롭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영유아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시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영유아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영유아의 어떠한 이야기(영동한 소리)도 진지하게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수 및 소수 영유아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영유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대부분의 경우 개별 영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자주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영유아의 놀이 상대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영유아가 원하는 식사량만큼 배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영유아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음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영유아에게 점심을 빨리, 모두 먹으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정해진 낮잠 시간에 맞추어 과도하게 재우고 깨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영유아가 쉬고 싶다고 할 때,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특별한 활동(현장학습, 운동회, 재롱잔치, 발표회 등)에서 영유아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역할 및 순서를 정할 때 영유아들이 정하도록 안내 및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교실의 규칙을 정할 때 영유아들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21	나는 영유아의 자리를 정해주지 않고 이야기나누기, 간식 및 점심시간, 활동 시간에 자유롭게 앉고 싶은 자리에 앉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영유아가 하고 싶지 않은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예: 놀이,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영유아에게 질문을 할 때 영유아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영유아의 발달 상태에 맞게 상호작용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영유아가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만들기나 그리기 활동 등을 영유아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영유아의 몸짓이나 표현을 주의 깊게 살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영유아의 요구와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영유아의 개별적인 실수와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영유아에 관한 개인 정보를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영유아의 잘못된 행동에 꾸지람을 주기 전에 영유아의 설명이나 이유를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발표, 줄서기, 자리에 앉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나 순서를 정해 영유아를 호명하지 않는다(예: 예쁘게 앉은 친구부터).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영유아의 성별 및 발달특성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학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영유아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영유아의 외모, 옷차림, 스타일에 따라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매일 하루 일과에 대해 영유아에게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자유선택활동 영역의 교재 교구를 자주 교체하며 공급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영유아의 발달 능력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영유아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컴퓨터, TV, VTR, OHP 등)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면담질문

보육교직원 면담 질문

1. 선생님의 성별과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 선생님이 소유하고 계신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3. 보육교사 3급 혹은 2급 자격을 취득한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선생님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5. 선생님의 총 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6. 현재 선생님이 소속된 보육시설의 유형은 무엇이고 현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7. 현재 선생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8. 직진교육이나 현직교육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9.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어떤 교육과정에서 받으셨습니까?
10. 선생님께서 받으신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1. ‘영유아 인권’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혹시 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만약 영유아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보육기관에서 일어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중 영유아의 인권이 가장 침해되는 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 만약 영유아의 인권이 보육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상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의 경험이나 동료교사의 예를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16.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일과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7. 선생님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8. 선생님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지도해야 할 책임과 영유아의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처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0.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보육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생님은 어떤 지도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선생님이나 주변 교사들의 경험에서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면담 질문

1. 현장에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운영/실시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2. 어떤 내용(과정)의 인권교육을 운영/실시하셨습니까?
3. 실시/운영했던 인권교육은 어떤 교수법을 사용했습니까? 어떤 형태였습니까?
4.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 보육교사들이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이야기 하는 어려움(딜레마)은 무엇이 있을까요?
7. 선생님께서 보육교사들을 인권교육을 하시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8.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육교직원의 인권역량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및 교재개발

| 인쇄일 | 2015년 12월 10일
| 발행일 | 2015년 12월 10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3층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855
| FAX | 02)2125-0917
| E-mail | hjkim510@nhrc.go.kr
| 편집 | 케이엘퍼니쉬 070-8654-4215
| 인쇄 | 금성문화사 02-2266-0571

ISBN : 978-89-6114-483-4 93370 비매품

